

2016

Vol.07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

코스카뉴스레터

KOSCA + NEWSLETTER



CONTENTS

KOSCA LETTER Vol.7

코스카레터 제7호

PART 1

- 1. 신년사03
 - 김병철 _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회장
 - 신홍균 _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 서병수 _ 부산광역시장
- 2. SPECIAL01
 - 부산시회 자문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위촉 안내06
- 3. SPECIAL02 - 의료업무협약 병원 안내07

PART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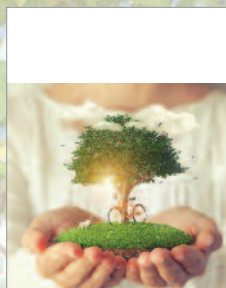
- 4. 협회소식08
- 5. SPECIAL03 - 소통하는 문화공간22
- 6.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24
- 7. SPECIAL04 - 이달의 경영어록/전문건설 구인광장31
- 8. 특허 및 신기술 소개[특허]
 - 외벽도장장치 _ (주)동건씨앤씨32

PART 3

- 9. 전문건설인의 삶34
 - 건설인 11호 이형민 _ (주)라이프하우징 대표이사
 - 건설인 12호 김종한 _ 무성토건(주) 대표이사
- 10. SPECIAL05 - 부산의 가볼 만한 곳38
- 11. 건설산업정보 - Part.140
- 12. SPECIAL06 - 건강지킴이46
- 13. 건설산업정보 - Part.248
- 14. SPECIAL07 - 쉬어가는 유머56
- 15. SPECIAL08 - 2015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 및 2016년도 시공능력평가 안내58
- 16. 건설관련 유권해석 및 판례62
- 17. 회원사 질의·응답64
- 18. SPECIAL09 - 미래산업을 바꿀 혁신기술66
 - 제4편 : 핀테크
- 19. SPECIAL10 - 그것이 알고 싶다68
 - 건설업 실질자본금 산정 변경 내용

PART 4

- 20. 회원사 현황70
- 21. 건설용어 바로쓰기72
- 22. 민원업무 처리절차 안내73
- 23. SPECIAL11 - 생활 속 TIP74
- 24. SPECIAL12 - KOSCA 중앙회 업무단신 · 우리시회 2016년 1/4분기 주요일정 안내75
- 25.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 진단 및 대책76
- 26. SPECIAL13 - 2016년 별자리로 보는 나의 운세78
- 27. 회원사 참여 마당80
- 28. 불공정행위 신고안내81



2016년 Vol. 07

발행인	회장 김병철
기고/투고	kosca21@kosca.or.kr
편집/발행처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디자인/제작	CCA (051. 647. 5991)
인쇄	성광정판 (051. 261. 0027)

시간은 많은 미완의 이야기들을 뒤로한 채 우리에게서 또다시 한 해를 거두어가고 동시에 새로운 한 해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새해’라는 것은 단지 새로운 시간구획으로의 진입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미완의 형클어진 모습과 회한을 한꺼번에 용해시켜 새로운 희망과 포부를 잉태시키는 관념의 용광로이자 인류 최고의 발명품인 것입니다.

지난 한 해에 대한 우리의 회한은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한해는 지구촌 한 구석의 에볼라 바이러스라는 작은 불씨 하나가 확산과 극복과정을 통해 큰 파장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나비효과의 실사례를 절절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관과 우려 속에서도 우리는 새해라는 용광로 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포부를 빚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어릴 적 상상 속에서만 가능했던 놀랄 만한 혁명적 기술들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무인자동차, 로봇, 3D 프린트, 사물인터넷, 핀테크, 유전체 지도 등 너무나 많은 기술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이념에 있어서도 개인주의를 벗어나 상호주의 공유경제, 공유와 소통에 기반을 둔 융합과 창조경제 시대가 오고 최근 파리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에서도 모든 당사국이 함께 동참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공동의 인식하에 상호양보와 협력을 통한 각국의 목표가 새로 공표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DNA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은 과거에 비해 양지인 것입니다. 창조적 혁신과 빠른 실행력으로 지난 부진을 말끔히 극복하고 세계의 문을 향해 달려 나가는 포부를 새롭게 할 때입니다.

2016년 한 해는 협회와 회원사 모두가 소통과 공유를 통한 빠른 혁신을 통해 우리 삶에 행복과 희망의 빛이 더 많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운과 평안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

새로운 희망과 포부를
빚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

김병철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회장



01

신년사

New Year Message

“

새로운 꿈과 희망이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

신 홍 균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존경하는 회원사 여러분!

2016년 희망찬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에는 행복하고 복된 일들로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우리 업계 삶의 터전인 건설산업 전반에도 붉은 원숭이의 힘찬 기운을 타고 새로운 꿈과 희망이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중앙회장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국토교통부장관·차관 및 한국도로공사사장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당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건의를 비롯해 베트남 건설협회와 MOU 체결을 통해 동남아시아 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업계의 권익신장과 시장개척을 위한 숨 가쁜 발걸음을 시작 하였으며, 앞으로도 회장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할 계획입니다.

2016년 새해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건설 환경이 예상되어 또 다른 도전과 시련이 닥쳐올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성장세 둔화, 미국 금리인상, 정부의 SOC 예산 축소 및 주택금융대책으로 인해 건설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앙회는 이러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 업계가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역 확대 문제, 원도급시장 진출, 수익성 개선 및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해외건설시장 개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저 역시 회원사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만큼 제도개선과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 4월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국회나 정부에서도 우리 업계를 정책동반자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우리 업계의 결집된 힘을 정치권에 보여주는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건설인의 단결과 화합이 전제돼야 합니다. 제가 회원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회원사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업계가 성공의 길을 열어 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성원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미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올해에는 협회가 창립된 지 30년이 넘어서는 해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존을 넘어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야심 찬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모진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강인한 풀을 의미하는 질풍경초(疾風勁草)라는 사자성어처럼 우리 전문건설인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서도 불같은 열정과 강철 같은 집념으로 역경을 극복하면서 희망과 미래의 꿈을 키워 온 저력이 있습니다.

올 한해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하겠지만 중앙회는 회원사의 권익신장과 위상제고 등 생존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만큼 회원사 여러분께서도 미래를 위한 과감한 변화로 전문건설업이 성공의 길로 나아가는 데 당당한 주역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전문건설인 여러분, 2016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경제 활성화와 지역 건설문화 발전에 노력해 오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도전과 어려움도 많았지만, 지역 건설업계가 힘을 모아 성원해 주신 덕분에 잘 극복해냈습니다. 경제 체질을 혁신하고, 인재와 기업이 모여드는 부산을 만들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그동안 다듬어온 정책들을 본격 추진해서 구체적인 성과로 변화를 체감하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시민 속에서, 시민과 더불어 부산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시민들께 약속드렸던 ‘서부산 시대’, ‘위대한 낙동강 시대’를 활짝 열어 가겠습니다.

특히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을 비롯해 지역 건설 사업에 우리 부산의 건설업체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바로잡아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지역 건설업체와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문건설업계에서도 과감한 변화와 기술 경쟁력 향상, 현장 안전을 강화하여 창조적인 건설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선 6기 부산시정의 최고 목표는 시민 한 분 한 분께 ‘일하는 행복’을 드리고, ‘청년들에게 희망이 있는 부산’을 만드는 것입니다.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더 힘을 쏟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에서도 일자리 창출로 적극 호응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희망의 2016년을 만들어 가는 데 건설인 여러분께서 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일하는 행복’이 있는
부산을 만들겠습니다.
”

서 병 수
부산광역시장



부산시회 자문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위촉 안내

부산시회에서는 건설업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건설분야에 경력이 많은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를 자문으로 위촉하였으므로,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법률·세무·노무문제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상담 및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촉 분야	성명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법률	이윤근 변호사	부산 연제구 거제동 1494-6 시티빌딩 2층 (법무법인 울담)	Tel. 051-507-9006 Fax. 051-507-9026
	박종규 변호사	부산 연제구 거제동 1491-2 성신프라이언 603호 (변호사 박종규 법률사무소)	Tel. 051-505-8631 Fax. 051-505-8632
세무	한범규 회계사	부산 강서구 명지오션시티 4로 81 세정프라자 302호 (선경세무회계사무실)	Tel. 051-831-0291 Fax. 051-831-0295
노무	여찬모 노무사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양정동) 시청역 롯데골드루즈 711호 (노무법인 부산삼신)	Tel. 051-866-4838 Fax. 051-866-0056





의료업무협약 병원 안내

부산사회에서는 2013년부터 회원사 임·직원 및 가족의 건강증진과 신속한 산재사고 처리 및 의료비 절감을 위하여 부산지역 의료기관과 상호 공동의 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한 **의료업무 협약(MOU)**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전문건설인 회원사 임·직원 및 가족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별 지원혜택 현황 >

구분	 은 종합병원	 부산고려병원	 좋은강안병원 GOOD GANG-AN HOSPITAL
위 치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진구 당감동 • 2호선 부암역 6번출구 (T. 051-607-01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구 대연1동 • 2호선 대연역 1번출구 (T. 051-930-3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영구 남천동 • 2호선 금련산역 4번출구 (T. 051-610-9974)
외래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부담금의 10% 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부담금의 10% 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료부분 10% 할인 (본인부담금)
입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급여진료비의 10% 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급여진료비의 10% 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료부분 10% 할인 • 상급병실차액 10% 할인
종합건강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검진 20% 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검진 20% 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검진 20% 할인 (비수기 1, 2월은 30% 할인)
장례식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례식장 30% 할인 • 장의용품 20% 할인 • 도우미 20시간 무료 • 운구료 무료 • 상조보험 이용시 빈소 사용료 10% 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례식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소임대료 10% 할인 • 장의용품 사용 시 장의용품, 빈소임대료 20% 할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또는 해당 병원으로 문의하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협회 소식

❖ 제회의 및 행사

2015회계연도 제2차 사회적책임경영위원회의

부산시회는 10월 8일(11:00 / 부산전문건설회관 4층 회의실) 2015년 제2차 사회적책임경영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네팔 대지진 성금 모금 캠페인 결과 및 주거환경개선(동방파크맨션 경로당 보수공사) 지원 결과를 보고하고, 2015 사랑의 연탄배달 추진사업 및 사회공헌활동(시설보수) 지원사업 등 주요 추진사업(안)에 대해 협의했다.



2015회계연도 제4차 및 제5차 회장단 회의

부산시회에서는 10월 16일과 11월 12일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2015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과 연말 주요 일정 및 회의 행사 개최(안) 등을 검토하고, 협회 창립 30주년 기념 우리사회 자체행사 계획(안) 및 부산광역시 2015년 자랑스러운 건설인상 추천 대상자 선정 등 주요 현안사항을 협의했다.



업종별(석공, 비계·구조물해체, 금속구조물·창호, 승강기설치공사업) 분과회의

부산시회는 11월 17일(11:00 / 서면 골든뷰 뷔페) 김병철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및 해당 분과위원장과 분과회 회원사 대표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종별(석공, 비계·구조물해체, 금속구조물·창호, 승강기설치공사업)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주계약자공동도급 실적 등 우리 사회 주요 업무추진 실적과 소규모 복합공사 대상금액 상향 개정내용 등을 보고하고, 업종별(석공, 비계·구조물해체, 금속구조물·창호, 승강기설치공사업) 당면 현안사항 및 협회에 바라는 사항과 궁금한 점 등을 질문하고 답변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2015년 제3차 전문건설인 경영세미나(조찬회)

부산시회는 11월 30일(07:00 / 부산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 이현승 국회의원을 초빙하여 '2015년도 제3차 전문건설인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부산전문건설업체 임·직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된 이번 조찬세미나에서는 부산광역시 이현승 국회의원이 '건설·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과제'란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강연이 끝난 후 우리사회에서는 감사의 뜻으로 이현승 국회의원의 캐리커처 인물화를 전달했다.



협회 소식

2015회계연도 하반기 신규회원 간담회

부산시회는 12월 4일(11:00 / 서면 골든뷰 뷔페) 2015회계연도 하반기 우리 협회 회원으로 가입한 신규회원사 대표자 및 임·직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회계연도 하반기 신규회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규 회원들을 위해 협회의 역할과 전반적인 건설산업제도 소개, 그리고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와 신고사항 등을 실은 '전문건설업 신규회원 업무편람' 책자에 대해 설명하고, 회장단과의 대화를 통해 신규 회원사의 애로사항에 대해 많은 의견을 교환하는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2015회계연도 임원연석회의

부산시회는 12월 9일(11:30 / 월강일식집 4층 회의실) 임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회계연도 임원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김병철 회장은 "회원사의 권익 신장과 협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2016년 새해도 불투명하지만 변화와 혁신의 선봉에 서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는 인사말을 전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및 연말연시 주요 일정을 협의하고, 협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 등을 교환했다.



2015년도 건설(전문)공사 실적신고 및 지방계약법령 강습회

부산시회는 12월 15일(14:00 / 부산시민회관 1층 대강당) 원활한 건설공사 실적신고 및 지방계약 관련 업무에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협회 회원사 대표자 및 임·직원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건설(전문)공사 실적신고 및 지방계약법령 강습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습회에서는 2015년도 실적신고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과 실적신고 프로그램의 설치방법, 인터넷 실적신고 요령 안내와 지방계약법령의 주요 개정 내용과 계약 관련 법규 설명(강사 : 행정자치부 회계제도와 예비찬 주무관)이 있었다.



2015회계연도 하반기 부산시회 모니터 회의

부산시회는 12월 18일(11:00 / 서면 골든뷰 뷔페) 회장단 및 모니터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회계연도 부산시회 모니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부산시회 김병철 회장은 "회원사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모니터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협회에서도 회원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 발굴 및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부산시회는 이날 회의에서 우수 모니터에 대한 시상과 함께 모니터활동 및 추진경과를 보고하고, 모니터 활성화 방안과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제출된 의견들을 수렴하여 회원사 권익·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건의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협회 소식

❖ 회원사 수주지원 및 업역확대를 위한 간담회 활동

부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과장 등 오찬 간담회

부산시회는 10월 17일 부산광역시교육청 김문기 교육시설과장 및 산하교육지원청 시설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전문건설업계의 현안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김병철 회장은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 보호·육성과 건설현장의 실시공자인 전문건설업체의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및 3억원 미만 소규모 복합공사의 전문공사 발주를 확대하고,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체들의 일감 확보를 위해 구조물해체 공사의 경우 분리 발주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부산광역시교육청 김문기 교육시설과장을 비롯한 산하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들은 “전문건설업체의 적정공사비 확보로 공사목적물의 품질을 확보하고 부실시공 근절과 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부산시회의 건의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부산시설공단 박호국 이사장 간담회

부산시회는 10월 27일 부산시설공단 박호국 이사장 및 건설관계관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전문건설업계의 현안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김병철 회장은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 보호·육성과 건설현장의 실시공자인 전문건설업체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3억원 미만 소규모 복합공사의 전문공사 발주를 확대하고, 공사현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분할발주 가능한 공사의 경우 보다 많은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구를 분할하여 발주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부산시설공단 박호국 이사장은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와 전문건설업체의 수주지원을 위해 부산시회의 건의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부산광역시 권준안 건설본부장 오찬 간담회

부산시회는 11월 18일 부산광역시 권준안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건설관계관 등 13명과 함께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전문건설업계의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김병철 회장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의 경우 부산지역의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최대 발주기관으로서 타 발주기관의 귀감이 되고, 이로 인해 전국 1위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지역 건설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향후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현장에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율 80% 이상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하였다.

이에 권준안 건설본부장은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가 살아야 부산지역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는 만큼 부산광역시 시책에 따라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정책에 더욱 노력하고,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 현장에 부산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허·신기술 개발 업무지원 간담회

부산시회는 12월 2일 부산전문건설회관 4층 회의실에서 건설 관련 특허 및 신기술 개발에 대한 회원사의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회원사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남부지식재산센터(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회) 유정호 센터장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유정호 센터장의 한국발명진흥회 업무소개를 시작으로 특허출원 및 등록 등의 절차와 지원방법, 시제품 개발, 자금지원, 연구시설 지원 방법 등을 설명하고, 특허·신기술 개발에 따른 회원사의 애로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식으로 진행되었다.

아울러, 부산시회는 향후 회원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한국발명진흥회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문건설업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관 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건설분야 전문가 무료법률 상담

부산시회는 12월 7일 회원사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사의 고충해결과 당면한 애로사항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도움을 주기 위해 법률 및 노무 분야에 대한 전문가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했다.

이날 상담에는 부산시회 이윤근 자문변호사가 발주자 및 원도급사와의 분쟁에 대한 법적 대처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상담했으며, 여찬모 자문노무사도 일용근로자 관리 및 4대 사회보험 등 노무 분야 전반에 대해 자세한 상담이 이루어졌다.



협회 소식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및 부산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노무제공자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전문공사 계약심사 폐지 건의”

부산시회는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에서 12월 18일(15:00 / 삼덕동상) 개최한 ‘새누리당 국회의원 초청 부산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부산지역 전문건설업계의 당면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박민식 부산광역시당 위원장 등 11명의 새누리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부산시회 김병철 회장은 “건설산업 생산체계 구조상 시공참여자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므로 건설한 전문건설업체가 범법자로 몰리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참여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노무제공자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전문공사는 계약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 등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부산지역 중소기업 활성화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당면한 여러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해결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 회원소식

2015년 제4차 부산전문건설인 단합산행

부산시회는 11월 13일 1,700여 회원사의 단합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부산전문건설인 2015년 제4차 산행'을 실시하였다.

이번 산행은 통영 달야항에서 유람선을 타고 뱃길로 15분 거리에 있는 만지도를 시작으로 올해 초 개통된 출렁다리(바닷물 위로 설치된 길이 98.1m의 현수교)를 건너 연대도 해안 길을 둘러보는 코스로 진행됐다. 회원사들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드넓은 바다와 해안절벽, 단풍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절경을 감상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우의를 다지는 등 협회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번 산행에서는 경남 통영에서 태어나 한국 소설(대하소설 『토지』 등)의 어머니로 생을 마감한 소설가故 박경리(1926년~2008년) 선생의 기념관을 관람하는 시간도 가졌다.



전건회 회장배 해외원정경기

부산시회의 회원사 친목모임인 전건회에서는 협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회원사 대표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상호 간의 화합과 친목 도모를 위해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베트남 다낭(몽고메리 C.C, 다낭 C.C)에서 회원친선골프대회를 가졌다.

부산시회 김병철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가 회원사 서로 간의 의견을 나누고 화합과 단결을 통해 오늘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참가자들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베트남 호이안 시가지와 산 전체가 대리석으로 이루어진 마블마운틴(오행산) 등 베트남의 주요 유적지 등을 돌아보며 회원사 상호 간의 친목 도모와 단합의 장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었다.

협회 소식

2015 사랑의 연탄기금 전달 및 연탄배달 봉사활동

부산사회는 지난해에 이어 '지역사회 사랑나눔'을 실천하고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난 10월 22일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정태룡 국장)을 방문하여 1,000만원(연탄 20,000장)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과에 전달했다.

이와 더불어 협회 창립 3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1월 9일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과 협회 사무처 직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범일동 소재, 일명 '매축지 마을'의 독거노인과 재가 장애인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여가정을 대상으로 '사랑의 연탄 20,000장(1,000만원)'을 직접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가졌다.

협회는 창립 이후 30여 년 동안 '부산광역시 교육청 방과후 학습실 운영에 따른 급식비 지원', '부산시 장애인 이용거주시설 지원', '세월호 성금모금', '캄보디아 초등학교 놀이터 설치 지원', '네팔 지진피해지역 주거지원 성금모금활동' 등 국내외를 망라해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이번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서, 협회 김병철 회장은 "협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부산전문건설인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과 협회 사무처가 한자리에 모여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나눔과 봉사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업과 지역사회가 공동번영이라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참여 소감을 밝혔다.





협회 소식

2015 사회공헌활동(시설보수) 지원사업

부산사회(회장 김병철) 및 사회적책임경영위원회(위원장 최상대)에서는 전문건설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발전하기 위해 지난 10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달간 지역의 열악하고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고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시행했다.

사회적책임경영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후된 어린이집 및 경로당의 시설보수공사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부산사회와 사회적책임경영위원회에서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나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1. 용당 어린이집

■ 시설보수 사항

- 어린이집 외부 담벼락 일부가 기울어져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기울어진 담벼락을 보수하고 담벼락 전체 재도장 시공함.
- 2층 피난계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 및 긴급상황 시 대피가 어려워 피난계단을 설치함.
- 1층 주 출입구 캐노피가 일부만 설치되어 있어 우천 시 처량에서 내린 어린이들이 비를 맞으며 출입을 하고 있어 기존 캐노피에서 연장하여 캐노피를 추가 설치함.

■ 공사내역

- 담벼락 보수 및 재도장
- 2층 피난계단 설치
- 1층 출입구 캐노피 연장
- 황토 교체

■ 지원업체



(주)우성엔지니어링개발
대표이사 최상대



신우개발
대표 김문곤



남곡조경
대표 박쌍수



(주)건강산업
대표이사 정종원



(주)삼강기업
대표이사 김점식



건진개발(주)
대표이사 심수율



2. 감만 어린이집

■ 시설보수 사항

- 외부 담벼락 및 계단의 도장면이 노후로 인한 탈락이 심하여 재도장 시공함.
- 건물 내외부 도장면이 노후로 인한 탈락이 심하고, 특히 건물 내부는 누수의 흔적이 보여 건물 내외부 전체적으로 재도장 시공함.
- 일부 강화유리 파손으로 안전상 위험이 내재되어 있어 강화유리 교체 시공함.

■ 공사내역

- 건물 내외부 도장 · 외부 담벼락 재도장
- 외부 계단 재도장 · 파손유리 교체

■ 지원업체



(주)건양산업
대표이사 정종원



(주)삼강기업
대표이사 김점식



건진개발(주)
대표이사 심수울



(주)카포산업
대표이사 박종섭



3. 우암동 동상성당 사제관

■ 시설보수 사항

- 사제관 1층은 현재 거주하고 있으나, 2층은 노후로 인한 곰팡이 등이 심하여 비어 있는 상태였으며, 단열 및 난방이 되지 않아 사람이 거주하기 힘든 환경이었음.
- 또한 사제관 건물이 노후로 인한 도장면 탈락이 심하고, 옥상 방수가 되지 않아 건물 내부 누수가 심함.
- 이에 따라 사람이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건물 내부 도배 및 장판, 단열 시공을 하였으며, 차후 누수 방지를 위해 옥상 방수 및 건물 전체 재도장 시공함.

■ 공사내역

- 사제관 외벽균열 보수 및 도장 · 사제관 옥상 우레탄방수
- 분당 정문, 후문 캐노피도장 · 관리사무실 옥상 우레탄방수
- 내부 도배 및 장판교체

■ 지원업체



(주)건양산업
대표이사 정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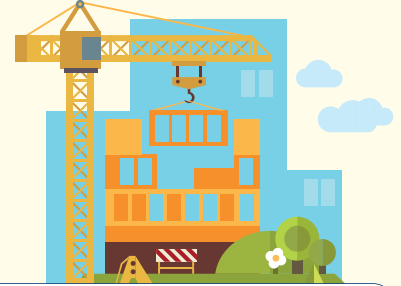
(주)삼강기업
대표이사 김점식



건진개발(주)
대표이사 심수울



협회 소식



4. 용호1동 용해경로당

■ 시설보수 사항

- 경로당 출입구 경사로 난간대 끝부분 고정부위가 파손되어 흔들거림으로써 어르신들의 보행에 위험이 있어 재고정 시공함.
- 주 출입문 잠금장치가 노후되어 개폐 작동이 원활하지 않아 교체함.

■ 공사내역

- 외벽 금속난간대 재고정 · 주 출입문 잠금장치 교체

■ 지원업체



(주)원지조경
대표이사 김선락



5. 우암동 산수부녀 경로당

■ 시설보수 사항

- 건물 외부 수도의 위치가 높아 어르신들의 사용이 불편하여 낮은 위치에 수도를 추가 설치함.

■ 공사내역

- 외벽 수도시설 추가 설치

■ 지원업체



금샘조경개발(주)
대표이사 김하연



(주)원지조경
대표이사 김선락



2015년 이웃돕기 성금 모금 결과

부산사회에서는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회원사 모두의 온정을 전달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11월 30일부터 3주간 이웃돕기 성금모금을 실시했다.

그 결과, 80개 회원사가 참여하여 1,270만원의 성금이 모금되었으며, 성금은 취약계층 생계 및 주거환경 지원기관 등에 기탁할 계획이다.



<이웃돕기 성금모금 참여 회원사>

(주)에이비엠그린텍 대표이사 김병철, (주)공간조경 대표이사 정석봉, (주)성덕건설 대표이사 김경식, 영빈건설(주) 대표이사 김재진, 신우개발 대표 김문곤, (주)거도산업 대표이사 김창욱, 고려토건(주) 대표이사 이미영, 광평건설(주) 대표이사 주한식, (주)국일에스에프건설 대표이사 이기덕, (주)그린아이디 대표이사 정인수, (주)금광이엔지 대표이사 오동진, (주)금호지질 대표이사 허성하, 길산건설(주) 대표이사 이태기, (주)다통 대표이사 박지혜, (주)대동환경기술 대표이사 하태광, 대미건설(주) 대표이사 노진석, (주)대양산업건설 대표이사 김진형, 배삼훈, (주)대왕석재 대표이사 양정식, (주)대원석재 대표이사 강승구, (주)대정이엔씨 대표이사 김미진, 동림건설(주) 대표이사 최문학, (주)동명도장 대표이사 안형필, 동신창호 대표 이기호, (주)동아피앤씨 대표이사 홍종욱, 두풍개발(주) 대표이사 허승구, (주)라이프하우징 대표이사 이형민, 라인공영(주) 대표이사 윤병국, (주)마인 대표이사 정일섭, 명작건설(주) 대표이사 박정구, (주)미강 대표이사 장종준, 민성건설(주) 대표이사 서영철, (주)벽창건설 대표이사 노진욱, 보명건설(주) 대표이사 유동호, 부성창호(주) 대표이사 조성래, (주)빅인테리어 대표이사 김상열, 사직건설(주) 대표이사 배병윤, 산양건설(주) 대표이사 정진갑, (주)삼영건장 대표이사 조경순, 삼지건설(주) 대표이사 이태원, 새벽건설(주) 대표이사 김정수, 새벽물류(주) 대표이사 정진상, 서연건설(주) 대

표이사 황경숙, 석봉건설(주) 대표이사 한상호, (주)성신창업 대표이사 김홍수, 성훈건설(주) 대표이사 김철훈, (주)세명아이디 대표이사 김성훈, 소원건설(주) 대표이사 최기항, 수영석재산업(주) 대표이사 문기찬, (주)수진건설 대표이사 김상욱, 신기개발(주) 대표이사 박순보, (주)에스지디자인 대표이사 김채용, (주)에이탑이엔지 대표이사 정진철, (주)연동 대표이사 반백철, (주)영진종합토건 대표이사 박기석, (주)예맥 대표이사 김정환, 신상호, 옥산건설(주) 대표이사 유재봉, (주)용광사 대표이사 김원호, (주)우성엔지니어링개발 대표이사 최상대, (주)원산토건 대표이사 전병우, 유니슨시스템창호(주) 대표이사 성환진, (주)유은건축 대표이사 주무은, 은산건설(주) 대표이사 박병길, (주)이연건설 대표이사 하정범, (주)이화종합건설 대표이사 광영길, (주)인산산업 대표이사 하진근, (주)일성기업 대표이사 천상우, (주)일창건설 대표이사 정하근, 장원엔지니어링 대표 백이승, (주)주일건설 대표이사 박강일, 천지개발(주) 대표이사 임철규, (주)청산산업 대표이사 강성구, (주)청호이.엔.지 대표이사 손승욱, (주)태벽건설 대표이사 백성호, 태영건설(주) 대표이사 박판용, 한국울타리공업(주) 대표이사 정승모, (주)한수유니텍 대표이사 손영규, 한일금속공업사 대표 주병규, 해진건설(주) 대표이사 이상호, 화성포장건설(주) 대표이사 노대환, (주)흥산건설산업 대표이사 강용호

01 힐링 상영

1관 <히말라야>



산사나이의 가슴 뜨거운 우정을 그리다!

휴먼 감동 실화 <히말라야>는 히말라야 등반 중 생을 마감한 동료의 시신을 찾기 위해 기록도, 명예도, 보상도 없는 목숨 건 여정을 떠나는 '엄홍길' 대장과 휴먼원정대의 가슴 뜨거운 도전을 그려냈다.

<히말라야>에서 대한민국 대표 산악인 '엄홍길' 대장으로 변신한 황정민은 "엄홍길이라는 인물이 영화 속에서 큰 산 같은 존재로 느껴지길 원했다. 원정 대장으로서는 대원들을 품을 수 있는 포용력과 확고한 의지, 강인한 정신력을 담아내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엄홍길' 대장이 끝까지 지키려 했던 후배 대원 '박무택'을 연기한 정우는 '박무택' 캐릭터에 대해 "박무택은 순수하게 산을 사랑하고, 자신의 꿈을 위해 서러면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된 사람이다. 함께 하는 동료들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는 캐릭터를 연기하며 자신을 스스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전했다.

'엄홍길' 대장과 후배 산악인 '박무택'은 2000년 칸첸중가와 K2, 2001년 시샤 팜파, 2002년 에베레스트까지 히말라야 4좌를 등반하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료이자 친형제와 다름없는 우애를 나눈 관계였다. 지난 2005년, '엄홍길' 대장은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등정 후 하산 도중 조난당해 생을 마감한 '박무택'의 시신을 거두기 위해 휴먼원정대를 꾸려 해발 8,750m 에베레스트 데스 존으로 산악 역사상 시도된 적 없는 등반에 나선다.

2관 <'대호' 비하인드 스토리>

1. 영화 속 설산을 연출하기 위해 제작진들이 옆 산의 눈을 직접 퍼다 날랐다.
2. 산속 촬영장이 너무 추워 따뜻한 편이라고 느낀 날의 온도가 영하 18도였다.
3. 개봉 전 호랑이 CG가 엉망이라 개봉하기 어려울 거라는 루머가 있었다.
4. 호랑이의 몸짓은 모션액터가 파란 옷을 입고 직접 눈발 위에서 구르며 연기했다.
5. 영화 속 호랑이의 몸무게는 400kg에 육박하고, 최민식과 닮은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긴 갈기와 오래된 상처를 추가했다.



02 힐링
여행

한겨울에도 뜨거운 겨울축제



지리산 '남원 바래봉 눈꽃축제'

행사기간 2016.01.01~2016.02.14

위 치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바래봉길 214(용산리 446-3)

행사장소 지리산 허브밸리, 바래봉 일대

연 락 처 운봉읍사무소 063-620-3818

2016년 1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남원시 운봉읍 지리산 바래봉 허브밸리와 바래봉 일원에서 '제5회 지리산 남원 바래봉 눈꽃축제'가 열린다. 운봉 애향회가 주관하는 본 축제에서는 눈썰매, 바래봉 눈꽃 등반대회, 눈조각 조형물 전시, 허브 등 각종 체험행사가 다채롭게 열린다. 특히, 천혜의 자연경관이 어우러지는 지리산 바래봉 허브밸리에 설치된 눈썰매장은 어린 이들에게도 좋은 추억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다. 또한, 바래봉은 해발 1,165m의 높이로 적설량이 많아 눈꽃이 곱게 핀 등산로를 따라 바래봉 정상까지 트레킹을 하며 설경을 감상하기에 제격이다. 관광객들은 연날리기, 눈싸움, 군고구마 구워 먹기, 허브제품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겨울철 낭만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아침고요수목원 '오색별빛정원전'

행사기간 2015.12.04~2016.03.13

위 치 경기도 가평군 상면 수목원로 432(행현리 산 255번지)

행사장소 경기도 가평군 아침고요수목원 내 주요정원

연 락 처 1544-6703

아침고요수목원 '제9회 오색별빛정원전'이 새롭게 달라졌다. 12월 4일부터 2016년 3월 1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축제에서는 빛의 클래식, 대형 빛 조형물, 새로운 별빛 구역 등 작년과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다. 아름다운 선율에 따라 빛이 달라지는 '빛의 클래식'은 올해 처음 선보이는 연출 방법으로 점등 시간 이후 하경정원에서 관람할 수 있다. 이 행사에서는 드보르자크의 '신세계 교향곡'과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에 맞춰 빛이 변화하는 이색적인 광경을 볼 수 있다. 또한, 침엽수 정원은 꼬끼리·기린·곰 등 최고 높이 약 3m에 달하는 동물 조형물이 설치되었으며, 아침광장은 잔디밭의 푸른색 조명과 달빛교회가 어우러져 신비로운 경관을 연출했다. 이외에도 구름다리와의 무지개벽에 새롭게 별빛 조명이 켜져 볼거리를 더했다. 오색별빛정원전 점소등 시간은 17시 20분부터 21시까지이며 토요일은 23시까지 연장한다.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부산시회,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건의

부산시회는 10월 7일 국토교통부에서 공고(제2015-1147호, 2015. 9. 24)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정 의견을 중앙회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부산시회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하도급공사대금 확보를 위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내용을 확인토록 규정되어 있어 공공 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점검하고 있지만, 민간공사의 발주자인 경우 해당 내용을 미숙지하고 이를 점검하지 않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내용을 점검토록 명시하여 줄 것을 건의한 것이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2 규정에 의거 민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요구할 수 있고, 보증서 미교부에 따라 공사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발주자는 건설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손해배상청구권 상실 대상을 귀책사유가 있는 발주자로만 명확히 해줄 것을 건의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고시 반대 및 퇴직공제 피공제자 범위 현행 유지 건의”

부산시회는 지난 9월 21일 장하나 의원이 입법 발의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고시 및 퇴직공제부금 전자인력카드제도 도입 등이 포함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10월 7일 중앙회를 통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건설근로자의 직종별 기능수준은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지역별, 기능인력 수급상태 등에 따라 노임단가의 편차가 커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을 고시하는 것은 현실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건설업자들을 모두 범법자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또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업의 특성상 잦은 이직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영세한 건설일용근로자들의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나, 건설기계를 직접 소유하고 직접 운영하는 자의 경우는 개인사업자로서 그 소득 또한 건설일용근로자들과는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임대료 산정 시 이미 건설기계 사업자의 이윤 등에 이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의 피공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현행유지를 건의했다.

이 밖에도 공제부금 납부 등을 위한 전자인력카드를 발급받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와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에 대한 벌금 처분도 완화하여 줄 것을 함께 건의했다.

❖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부산 건설업체 참여 확대 건의

부산시회, 건설협회와 공동 건의문 한국수자원공사 제출

부산시회는 10월 12일 대한건설협회와 함께 한국수자원공사에 수주난에 시달리는 부산 건설업체의 일감 확보를 위해 에코델타시티 2단계 1구간 공사에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비율을 높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새누리당 부산시당, 부산광역시는 지난해 10월 지역업체 공동도급 30%, 하도급 50% 이상의 권장비율에 합의했다. 그러나 에코델타시티 1단계 공사에서는 이 권장비율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처럼 부산의 대형 관급공사를 메이저 건설업체들이 싹쓸이하고 자사 연고지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 하는 바람에 지역 건설업체들은 일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부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2단계 2-2공구는 1단계 4공구와 같이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비율 49% 이상과 하도급 비율 60%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2단계 공사의 경우에는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도급 비율 40% 이상일 경우 가점 5점을 부여하고, 지역 하도급 참여 비율 50% 이상을 의무사항으로 명시하여 줄 것을 건의한 것이다.

❖ 건설공사 설계 시 국내 생산자재 설계반영 건의

외국산 수입자재 사용 근절 협조

부산시회는 10월 14일 부산지역 일부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설공사 설계 시 국내생산과 국내시험인정이 되지 않은 특정 국가의 제품을 명기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부산광역시청 차원에서 부산광역시 건축사협회에 협조 요청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부산광역시에서는 부산시회 의견을 수렴하여 부산광역시 건축사협회에 협조 요청 문서를 10월 19일 발송하였고, 부산광역시 건축사협회에서도 국내생산 건설자재 사용 확대에 동참하기 위해 소속 회원사에게 건설공사 설계 시 이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이는 국내 건설자재 생산업체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건설업체들은 원활한 자재 수급으로 공기단축 및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등의 효과를 볼 것이다.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계약서 하자담보책임기간 인정기준 명확화 등 건의

부산시회는 11월 3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계약당사자 간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선 하자담보책임기간과 사유뿐만 아니라, 향후 계약 당사자 간 발생할 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해 추가비용 유무에 대해서도 명확히 명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신규 건설기업의 일시적 자본금 미달 허용 입법예고(안)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건설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자본금 등록 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만, 명확한 자본금 기준미달 평가를 위해 정기연차 결산일(12. 31) 기준의 재무제표 확정 신고기간(3. 31)을 고려하여 90일로 연장해 줄 것을 건의한 것이다.

❖ 부산광역시교육청과 중소기업중앙회와의 업무협약 시 건의 자료 제출

소규모 복합공사 전문공사 발주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 건의

부산시회는 11월 4일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에서 주최한 「특성화고 취업 및 중소기업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시 건의자료로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가 교육청에서 발주되는 공사에 원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10월 23일 건의했다.

금번 부산시회에서 건의한 내용은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소규모 복합전문공사의 경우 실시공자인 전문건설업체에게 발주하여 줄 것과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의 경우는 전문건설업체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를 확대하고, 구조물해체공사는 하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의 성격상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분리 발주해 줄 것을 건의한 것이다.



❖ 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대응 강화

부산시회, 전문건설업체 하도급대금 확보 노력 강화

부산시회는 회원사로부터 상시적으로 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아 사실여부 확인절차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 및 부산광역시청 등에 고발조치 하여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부산시회에서는 11월 16일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속 회원사 신고 건에 대해 피신고자인 종합건설업체를 협회 방문토록하여 위반 법률 근거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로 11월 23일 하도급대금을 지급받는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부산시회는 소속 회원사가 종합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하도급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상시 신고를 접수 받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부산시회 건설정책과(☎051-633-0260)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 건설업 무등록시공 근절 추진

건설업 무등록 시공 근절!! 우리 협회가 앞장서겠습니다.

부산시회에서는 11월 18일 건설부조리 근절의 일환으로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 등을 통해 무분별한 광고를 게재한 후 실내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방수, 도장공사 등을 도급받아 시공하는 부산지역 300여 개 건설업 무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건설업 무등록 시공행위를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으므로 전문건설업을 등록 후 시공하여 줄 것을 안내했다.

또한, 12월 8일 부산지역 150세대 이상 660여 아파트 관리사무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광역시지부 및 각 구·군지회, 의료·미용 관련 단체, 부산지역 주요 대학교에도 동 내용을 안내하여 실내 인테리어 공사, 방수공사, 도장공사 등을 발주할 경우 해당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업체에게 발주케 함으로써 건전한 건설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부산시회는 부산광역시 및 16개 구(군)청 공보게 및 편집실 등에도 건설업 무등록 시공 근절 홍보문을 각 시·구(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부산시민에게 홍보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원 협회 등 단체, 학회 추천자 현행 유지를...”

부산시회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10월 30일 입법예고한 최저가낙찰제를 종합심사낙찰제로 대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1월 20일 중앙회를 통하여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금번 개정(안)에서는 건설 관련 협회 등 단체에서 추천한 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건설 관련 협회 등 단체는 지방계약법 제정 시에도 참여하였으며, 오랜 업무를 통해 계약 법률에 관해서는 그 어느 전문가보다 월등한 업무지식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기존 계약방식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발주방법(주계약자 공동도급, 소규모 복합공사, 분리발주 등) 도입에 대해서도 가장 능동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써 그 누구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심의·결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현행 유지하여 줄 것을 건의한 것이다.

❖ 2016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개정 건의

하도급 계약 자료의 정보공개 등

부산시회, 2016년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개정 건의

부산시회는 11월 23일 하도급 계약 자료의 정보를 공개하고, 공사대금 지급 사실 및 내용에 대해 하수급인에 통보하는 등 2016년도 적용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를 개정하여 줄 것을 부산광역시에 건의하였다.

개정건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 건설공사 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업체는 건설폐기물 운반과 처리만 부담하고, 건설업체에서 해당 폐기물의 상차를 부담하고 있어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건설폐기물 상차를 위해 장비를 장시간 대기시킴으로써 경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건설폐기물의 집하는 건설업체가 부담하고, 이후 건설폐기물의 상차, 운반, 처리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업체가 부담하도록 원가계산에 명확히 명시하여야 함.
- ▲ 원도급자가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했음을 서류상으로만 작성하고 실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시키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발주자는 원도급자에게 공사대금 지급 시 하도급자에게도 그 지급 사실 및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는 통보받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보증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하수급인인 전문건설업체가 받고 있으므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내용 시정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공공 발주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공개는 하도급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사를 발주한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서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의 계약정보공개 시스템에는 대부분 입력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발주기관이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에 명확히 명시하여 건설시장의 건전성과 공공공사의 투명성을 강화하여야 함.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건설자재·부재 원산지 공개 차등 적용 건의

부산시회는 11월 27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자재·부재 원산지 공개 의무화를 주된 내용으로 국회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국토교통위)이 대표 입법발의(2015. 11. 18.)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중앙회를 통해 국회에 제출했다.

금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는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자재·부재 원산지 게시 및 공개를 의무화하여 행정형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자칫 건설한 건설업체를 범법자로 전락시킬 수 있으므로 우선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현장부터 적용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건설자재·부재 원산지 게시 위반에 따른 처벌기준도 현실에 맞도록 거짓으로 게시 및 공개한 경우에만 행정형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토록 하고 단순히 게시 또는 공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차별화도 함께 건의했다.

❖ 2016년 부산지역 공공공사 시행계획 자료 수집

부산시회는 12월 2일 부산광역시 및 16개 구·군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교육지원청, 공사·공단 등에 2016년도 시행예정인 건설공사 발주계획을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했으며, 향후 수집된 발주계획정보는 발주기관별로 부산시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회원사에서 건설공사 수주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회는 수집된 건설공사 발주계획 자료를 토대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소규모 복합공사 전문공사 발주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 지역건설산업 발전과제 제출

하도급계약자료의 정보공개 활성화 등 건의 부산사회,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상정 안건 제출

부산사회는 11월 30일(15:00 /부산광역시청 7층 회의실) 「2015년도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에 참석하여 부산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과 함께 현안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의는 부산광역시 정경진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부산시 건설관계관, 부산지역 건설정책담당관 및 건설 관련 단체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부산사회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공사의 하도급공사 계약정보 공개의무가 준수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획일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지자체별 지침시달과 담당자 교육을 병행하여 줄 것과 부산지역 재개발·재건축 도시정비사업에 보다 많은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업 활동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명단 공개를 공식 요청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부산사회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부산지역 산하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에 하도급계약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시 추진위원회 등의 명단을 건설 관련 단체에 통보토록 문서를 시달한 바 있다.

❖ 건설공사 발주 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업역준수 협조

부산사회는 12월 8일 부산광역시 및 16개 구·군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교육지원청, 공사·공단 등에 건설공사 발주 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업종별 업무내용을 반드시 준수해 발주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부산사회의 이번 건의는 일부 발주기관에서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은 하나의 특화된 시공방법으로 건설공사 낙찰자가 신기술 보유자와 신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시공 가능하므로 시공업종을 선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초 시공과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각 공종에 상응하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였으나, 하자보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몰아주기식 발주를 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의 업종별 업무영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이의 시정을 건의한 것이다.



성공하는 회사는
총체적인 목적에 관한 한
최고 경영진에서 말단직원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아무리 현명한 경
영전략이라도 직원들과의 공감
대가 없으면 실패하고 만다.

HP 전 회장, 존 영(John Young)

99%의 고객만족은
불충분하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나타날
100% 고객만족 기업에
고객을 빼앗긴다.
고객은 2등 기업엔 결코
애정을 베풀지 않는다.

페덱스 CEO, 프레드릭 스미스

전문건설 구인광장



구 분	내 용
모 집	경리 (회계·총무직) / 경력 1년 / 1,500~2,000만원 / 1명 / 수시모집
회사명	(주)신조건설
전화번호	051 - 623 - 3211 (경리부)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석포로 121(대연동) 2층

구 분	내 용
모 집	건설기술자 (토목) / 경력 5년 / 3,000~3,500만원 / 1명 / 수시모집
회사명	양정건설(주)
전화번호	051 - 724 - 2253 (담당자 : 성봉진)
주 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청로 40 양정건설(주)

구 분	내 용
모 집	건설기술자 (건축) / 경력 2년 / 1명 / 2016. 2. 29 접수마감
회사명	주식회사 오방건설
전화번호	051 - 506 - 5596 (담당자 : 이희정)
주 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시아드대로170번길 14(사직동) 동원빌라상가 2층

구 분	내 용
모 집	사무관리직 (회계, 공무부 책임자) / 경력 5년 / 1명 / 3,500~4,000만원 / 수시모집
회사명	한일강건
전화번호	010 - 3834 - 1635 (담당자 : 주재원)
주 소	부산광역시 북구 사상로 558번 나길 73(구포동)

특허 및 신기술 소개



(주)동건씨앤씨
대표이사 변재식

[특허]

외벽도장장치

(Apparatus for exterior wall)

등록번호 : 1014841690000



개발배경

현행 건설업계에서는 고층 외벽 도장 시 도장 기능공이 달비계를 이용하여 하강하며, 도장 전에 필요한 전처리 및 도색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때 작업자의 안전문제가 항상 대두되며, 외벽 도장 작업 중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또한, 기능공 개인의 경험에 따라 전처리 및 도색 작업을 함으로써 도장 품질이 일정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고층건축물 도장 보수 주기 또한 건축물의 형상 및 수행한 작업자의 능력에 따라 달라 정확히 산정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본 기계 고안 및 제작의 필요성이 절실하여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다.

작동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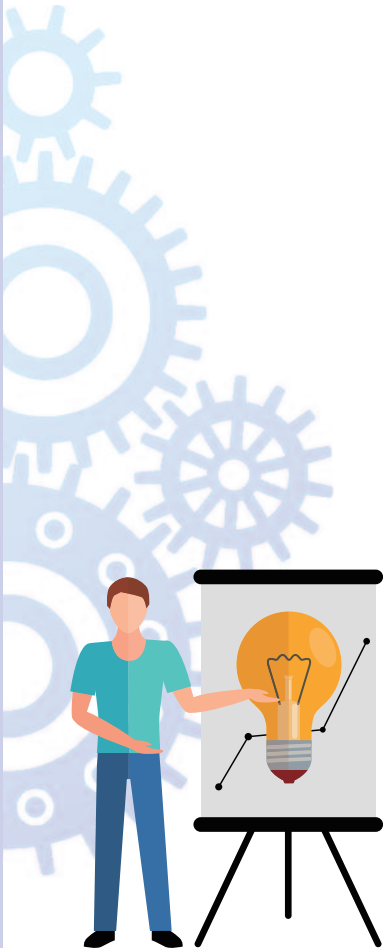
현존하는 도장 방법 중 건축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것은 붓, 롤러, 제한된 스프레이 방법이 전부이며, 스프레이 작업으로 인하여 비산되는 도료는 도료 손실은 물론이며 환경오염까지 일으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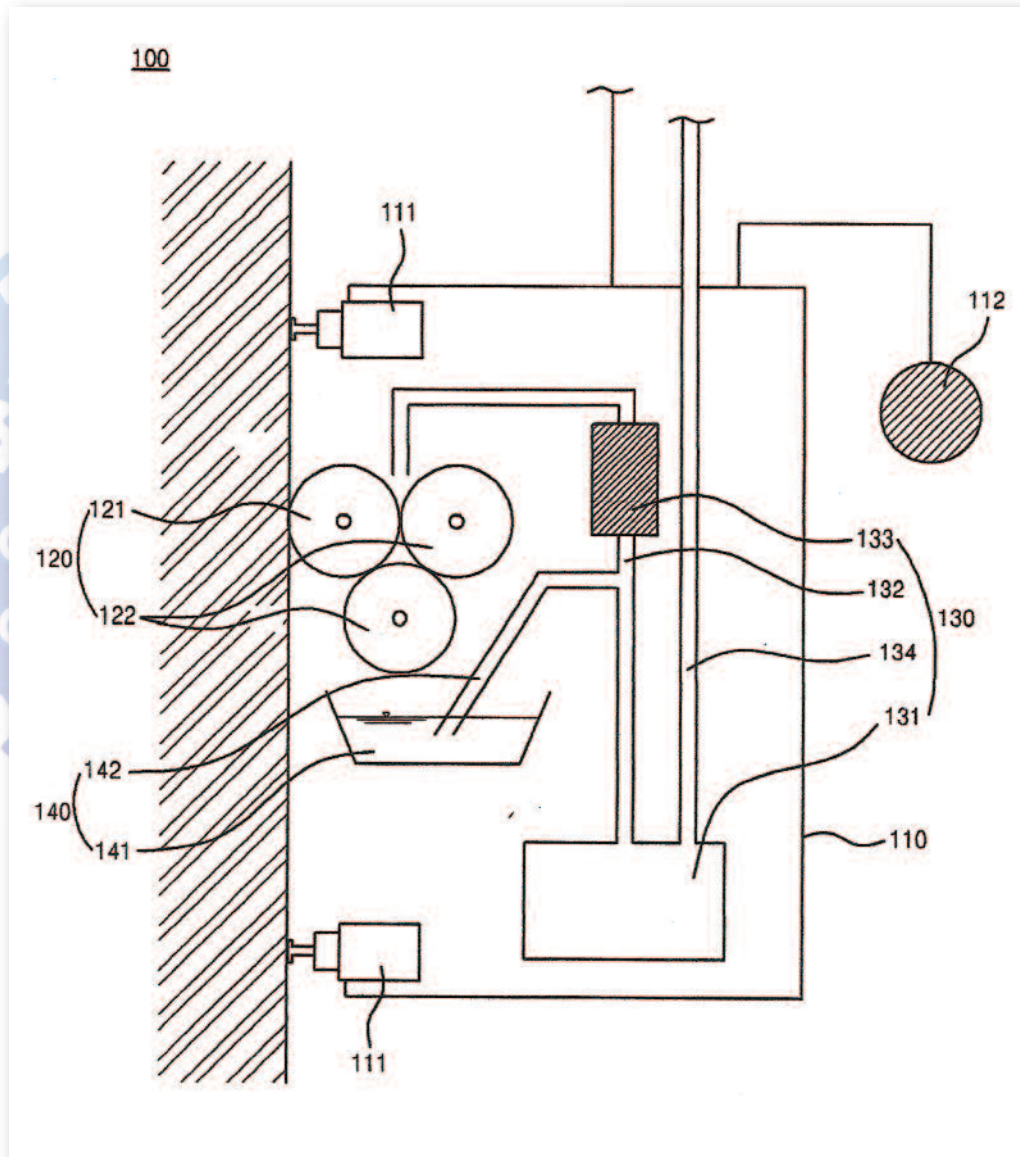
본 기계는 구동모터로 작동하는 롤러를 이용하여 외벽에 도장하는 기계로, 상하(y축) 이동 중에 전기력에 의한 구동을 이용하여 페인팅하는 기계이다. 물론, 좌우(x축) 이동을 위한 이동 레일과 롤러에 도료를 무한 공급하는 장치 및 회수하는 장치도 포함된다.

기계 작동을 위한 오퍼레이터(도장 기능인)도 일정교육만 수료하면 도장이 가능해져, 항상 달비계를 이용하는 고소 외벽 작업자가 아니더라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기대효과

- 오랜 기간 숙련된 로프공이 아니더라도 외벽 도장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 항상 일정한 품질을 기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보수 주기 연장 등 여러 측면의 효율성에 있어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
- 작업적인 측면에서는 작업자의 안전 보장, 도료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생산성 증대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 고층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고층건물에 적용 가능하며, 도색 작업 외 별도의 작업 수행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내 고층아파트 세대 수 및 보수 주기 등을 감안하면, 그 시장 또한 엄청나다.





〈외벽도장기계 장치〉

향후과제

신규 도장과 보수 도장 시에 기계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처리 기계도 개발과제이다. 또한, IT 등 첨단기술과 접목된 안전자동화 및 본 기계로 적용 가능한 메꿈재 개발도 병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주)라이프하우징

대표이사 이형민

고객을 만족시키는 게 돈 버는 일

건삶인으로서 성공에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

고객을 만족시키는 게 돈 버는 일이다. 그러려면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 기업가는 모름지기 상품, 그 이상의 가치를 팔 줄 알아야 한다. 경쟁력이 여기서 샘솟는다. (주) 라이프하우징 이형민(68) 대표는 그 가치를 **정직과 성실, 믿음으로 본다.** 건삶인으로서 성공가도를 달려온 비결이라 확신한다. 고객을 보지 않는 기업은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기를 낚고 싶으면 미끼를 준비하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서양 격언이 있다. 뉴욕 월가에서 주식 브로커들이 흔히 사용하는 말로 증권 정보를 귀동냥하려면 점심이라는 최소한의 미끼라도 던져야 한다는 의미다. 사업도 마찬가지. 결과를 기대하기에 앞서 준비를 잘해야 한다. 행운만 기대하다간 낭패를 보기 십상. 그러니 돈을 벌려면 고객을 만족시켜야 한다. 일본의 자동차 회사 닛산을 보라. '기술의 닛산'이라 불렀던 이 회사는 1990년대까지 정상급 회사였지만 기술에만 의존하다 2000년 프랑스 르노에 합병되는 비운을 맞았다. 당시 평가가 이랬다. 기술은 앞서 있으나 소비자가 사지 않는 자동차라고.

반대로 고객을 생각해 성공한 기업들도 수두룩하다. 월트 디즈니는 꿈을 팔았고, 아르마니와 프라다, 샤넬 등 명품업체들은 이미지와 품격을 내세웠다. 도미노 피자도 인기를 끈 것도 제품 자체보다 30분 이내 배달이라는 원칙을 지킴으로써 소비자들의 믿음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정직을 내세워 일거리를 거머쥐었고 성공했다. 다시 말해 돈을 벌기 위해 고객을 속이거나 이용하지 않았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시공했고, 고객이 어려울 때 귀 기울여 준 덕이었다.** 그래서 작지만 건강한 기업, 강소기업을 일굴 수 있었다. 눈앞의 나무(이익)에 앞서 숲(미래)을 내다보는 눈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대표는 부산 토박이다. 거제에서 태어났지만 부산에서 줄곧 살았다. 직원은 12명에 불과하지만 일감이 넘치고 넘친다. 오히려 일거리를 선택해야 하는 게 고민이라고. 불황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지역 전문건설업체 상황과는 정반대다. 이 대표는 거래처가 좋다고 말했다. IS동서와 경동, 삼성, 삼성기업, 반도 등 굵직한 업체들로부터 믿음을 얻은 결과라는 것이다. 연간 200억원 정도의 대단한 수주실적은 정직과 성실시공이라는 상품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은 덕분이었다. 어릴 적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고생한 그는 대학을 중퇴하고, 후스마 벽지라는 한일합작법인에 취직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전량 일본에 수출하는 일을 10년간 하면서 기술과 마케팅을 눈여겨 배웠고, 1981년 삼익장식이라는 회사를 세워 독립했다. 당시 건설경기가 호황일 때라 벽지와 커튼이 날개 돋치듯 팔려나갔다. 하지만 이 대표는 소매업에 만족하지 않고 도매업으로, 다시 건설업으로 확장시켜 나갔다. 1992년 라이프하우징을 세우면서 업역을 실내건축과 내장공사 분야로 진출했다.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인테리어 디자인은 과감히 포기하고 시공 쪽으로 외길을 걸었고 부산 톱클래스 전문건설업체로 발돋움했다. 강소기업 인증을 받은 것도 좀 엉뚱하다. 사세가 확장되자 자체 구매를 하려니 보증이 필요했는데 실적을 지켜본 신용보증기금이 추천하는 바람에 강소기업에 선정됐다고.



“세상을 아름답게.” 이 대표의 기업철학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 이타적인 생각으로 열심히, 그리고 정직하게 일을 하게 되면 자연히 일거리가 따라오는 건 물론이고 보람도 생긴다는 확신이 두 단어에 짙게 배어있다. 이 대표는 저가 견적서를 보고도 일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일이 없다. 그렇다고 날림이나 부실시공을 하는 게 아니다. 출혈이 있더라도 고객의 입장에서 성실 시공한다. 그러니 고객이 감동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비록 처음에는 손해를 보더라도 나중에는 그걸 메우고도 남을 이익이 되어 돌아온다는 거다. 시장에 소문이 났다. 시키니 다 해내더라는. 이곳저곳에서 주문이 쇄도했다. 이제는 무조건 일을 맡을 수가 없다. 할 수 있는 일을 고를 수밖에 없다고 한다. 능력을 넘는 무리를 절대 하지 않겠다는 거다. “정직과 성실 시공을 위한 선택을 합니다. 그래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는 꼼꼼하기로 소문난 사람이다. 시방서를 보고 공사를 하다가도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재검토를 요청한다. 현장 여건과 기능적 측면을 따져서 고객 눈높이를 맞추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도면대로 하다간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준다고. 그래서 시공 방향이 달라진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교회 장로답게 좌우명을 문자 성경 구절을 내세운다.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기업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회사가 잘 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사회적 책임이라는 점을 잊은 적이 없다. 그는 최근 결단을 내렸다. 은퇴할 즈음 회사 경영권을 직원들에게 넘기겠다고. “기업은 나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직원 모두의 재산이니까요. 마음을 결정하고 나니 홀가분합니다.” 우물의 법칙이 떠오른다. 재물이란 우물과 같아서 배푼다고 줄어드는 게 아니라 배푼 만큼 다시 채워진다는 세상 이치를 그는 잘 알고 있는 듯하다. 장사는 돈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랑을 남기는 것이라는 명언을 실천하려는 이 대표. 그 정신이 추운 겨울,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준다.

글. 언론인 최원열



무성토건(주)

대표이사 김종한

철저한 시장분석이 레드오션에서 살아남는 길

공정한 경쟁으로

더 좋게, 더 빠르게, 더 안전하게!

레드오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시장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치혁신으로 새 시장을 활짝 열어젖히는 게 블루오션 전략의 핵심이라 하겠다. **전문건설업에서 가치 혁신 1순위는 기술이다.** 건설인 김종한(58) 무성토건(주) 대표는 기술을 가지면 시장이 열린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노하우(know how)보다 노후(know who)나 노웨어(know where)가 중요함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자체 역량에 의존하는 성장보다 외부와의 협력을 비즈니스 모델로 삼는다.

무성이라는 회사명 역시 기술력을 정조준하고 있다. 힘쓸 무, 이룰 성. 땀 흘려 기술을 개발해서 성공을 이루겠다는 뜻이다. 그는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올라간다. 하지만 일정 수준에 이르면 엄청난 가속도를 붙일 줄 안다. 그만큼 기초를 탄탄하게 다졌기 때문. 제대한 뒤 손바닥만 한 밭에서 농사짓기 싫어 고향 의령을 등지고 무작정 부산으로 올라와 버스회사에 취직했다. 하지만 주야교대업무가 고달파 중장비 기사 자격증을 땀다. 10년간 지게차, 굴삭기 등을 몰며 건설현장을 누볐고 그 경험을 밑천 삼아 전문 건설업에 진출했다. 1996년 건설인으로서의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하지만 호사다마랄까. 회사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IMF 외환위기를 맞아 절체절명의 위기



를 맞았다. 당시 경험도 기술도 없었던 터라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더구나 어음 부도까지 맞게 되니 눈앞이 캄캄했다. 김 대표는 이를 악물었다. “지금 사업을 접는다면 인생도 끝이라 생각하고 죽기 살기로 버티자고 독하게 마음먹었습니다. 이후 3년간 랑 죽을 고생을 했지만 견뎌냈지요. 어음 결제를 절대 하지 않고, 거래처에 믿음을 주는 자세도 갖췄습니다.” 무성토건과 무성중기는 이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고 지역 업계에서 알아주는 중견업체로 우뚝 섰다. 그 비결이 뭘까. 상대가 일거리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확실한 보증수표가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신념과 성실이 없었더라면 일등업체가 될 수 없었다고 단언한다.** 시장에서 무성토건과 일하면 돈 매일 염려가 없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회사는 날개를 달았다. 김 대표는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좋아하지 않는다. 자신 있는 분야에서 한 우물을 파겠다는 사업철학을 고집한다. 잘 되는 회사는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자 한다. 안 되는 회사는 사업은 별이지만 무엇 하나 일등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간파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 다각화는 산업의 순환적 불황에 리스크를 줄이려는 유용한 시도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할수록 다양한 분야에서 잘하기란 매우 어렵다. 특히 중소기업은 인력과 자본에 제약이 많기에 특정 분야의 전문화, 다시 말해 한 우물을 파는 게 유리해진다. 예컨대 인삼무역으로 명성을 떨쳤던 개성상인을 보자. 그들은 빛이 없고, 한 우물을 파며, 신용을 중시한다. 그 맥이 면면히 이어져 태평양과 신도리코 녹십자 같은 쟁쟁한 기업들을 탄생시키지 않았다. 김 대표의 비즈니스 철학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이러한 기초 위에 탄탄한 기술력을 더한다면 밝은 미래가 열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무성토건 직원 47명 전원이 전문성을 갖춘 인재라는 사실도 놀랍지 않다. 그래서 무성토건은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다. 그 미래

를 내다보는 김 대표의 방식이다. “과거 15년 이상 부산의 대표적인 전문 건설업체인 동아지질과 협력하면서 노하우를 많이 배웠습니다. 바닥부터 다져 세계적인 명성을 쌓은 동아지질의 성장 과정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는 해수담수화 플랜트 경화기술 사례를 들어 미래 전문건설의 방향을 설명했다. 물 부족 국가에게 해수담수화 기술은 꼭 필요하다. 요즘 고리 원전이 있는 기장군에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기술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장군이 아닌 지역이었다면 전혀 문제 될 게 없습니다. 해수담수화 기술 못지않게 그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의 재활용도 중요합니다. 그걸 보도블록 등 건설재대로 쓸 수 있다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로 레드오션을 블루오션으로 바꿀 전략이라는 거다. 흙막이와 물 새는 것을 막는 무성토건의 **독자적인 특허 치수공법은 여타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첨단 기술력을 잘 보여준다.** 부산 최고층인 해운대 위브더제니스아파트 등 쟁쟁한 결과물들이 쏟아져 나온 건 당연지사. 김 대표는 믿음과 기술을 거듭 강조한다. 건설업에 전문성 없이 덤벼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수주부터 받고 보자는 식이니 공사 부실과 이미지 훼손은 물론 도산이 속출하는 겁니다. 저가로 공사를 맡기는 1군업체들의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도 문제가 심각해요.” 부산시의원이기도 한 그에게 사업에 도움이 되느냐며 슬쩍 물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며 황급히 손사래를 친다. “요즘 청탁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위원회도 건설과 무관하게 배치되는 데다 주위 눈총도 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몸을 사려야 해요. 위원회 배치 원칙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나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니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그는 정치에 더 이상 미련이 없다며 이번 시의원 임기가 끝나면 사업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원으로서 그는 지난해 5월 지역 업체를 위한 조례를 입법화했다. 전문 건설업계의 일거리 분야를 확대한 ‘하도급 활성화 조례’로 인해 좋은 평가를 받은 게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글. 언론인 최원열





태종대 등대

부산의 명소 ‘태종대’

태종대에서 청명한 날에는 약 56km 거리인 일본의 쓰시마섬까지 볼 수 있다.

태종대는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예부터 시인과 묵객들이 즐겨 찾았던 곳이다. 이곳은 일본 강점기 때부터 오랫동안 군 요새지로 사용되던 관계로 일반시민의 출입이 제한됐다. 그러다가 1967년 국토교통부가 유원지로 고시하였고, 뒤이어 1969년에 관광지로 지정되었다.

태종대 순환도로는 총연장 4.3km로 1970년부터 개설하기 시작하여 3년 만에 완공하였다. 1972년 6월 26일 부산기념물 제28호로 지정되었고, 1974년에 태종대유원지 조성계획에 의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였다. 2005년 11월 1일 국가 지정 문화재 명승 제17호로 지정되었고, 2013년 11월 27일에는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정되었다.

태종대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태종무열왕이 활을 쓰기 위하여 이곳을 찾았다는 사실에서 유래된다. 또한 태종이 일본을 토벌하기 위해서 태종대에 머물렀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러한 이야기는 정확하게 검증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태종대가 고대 사회부터 지역적으로 매우 중요했다는 사실은 받아들일 수 있다.



‘태종대(太宗臺)’라는 이름에 관한 내력은 신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동래부지」(1740년)에 의하면, 신라 제29대 태종무열왕이 이곳에 와서 활을 쏘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와 이곳 이름을 ‘태종대’라고 붙였다는 것이다. 또한 안정복의 「동사강목」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동래의 절영도에 태종대가 있는데, 속전하기를 ‘신라의 태종이 대마도를 토벌할 때 주필(임금이 거동하는 중간에 어가를 멈추고 머무르거나 묵던 일)하였던 곳’이라 한다. 신라는 조그마한 구석진 땅이로되, 육지로는 능히 고구려와 백제에 대적하고, 바다로는 왜국을 정벌하였으니, 그 병력의 웅대함이 삼국을 통일할 만한 것임을 생각할 수 있겠다. 후세에 해동의 온 땅덩어리가 섬나라 오랑캐들에게 곤욕을 당한 것은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다. 위정자들은 의당 그 방어책을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안정복은 신라의 태종이 대마도를 칠 때 태종대에서 머물렀다는 설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조선의 태종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다. 조선 제3대 태종이 치세 말년인 1419년에 큰 가뭄이 들자, 그해 5월에 태종대를 찾아 비 내리기를 빌어 비가 내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온다. 그로부터 음력 5월 초에 내리는 비를 「태종우」라고 부르게 됐고, 가뭄을 만나면 비 오기를 이곳에서 빈다고 했다. 「동래부지」에서 말한 대로 가뭄이 닳치면 태종대에서 비 내리기를 빌었는데, 동래 지방에 가뭄이 닳치면 동래부사는 태종대에서 기우제를 올렸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사묘조’에 절영도 신사에 관한 다음의 기록이 보인다.

“돌로 단을 만들었으며 옛날에는 비를 빌어 징험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편찬 시기가 중종 25년(1530년)이니, 그 책이 편찬되기 이전까지 영도 태종대에 신사가 존재하고 있었음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동래부음지」 ‘고적조’에 태종대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동래부 남쪽 30리의 절영도 동쪽에 있다. 바닷물이 돌레를 돌고 서쪽으로 한 석교가 있어 간신히 사람이 지날 수 있다.”

신라의 태종이 대마도를 칠 때 태종대에서 머물렀다거나, 태종무열왕이 활을 쏘아 포장과녁을 마친 곳이라 하여 태종대라 하게 되었다거나, 조선 태종이 치세 말년에 큰 가뭄이 들자 비 내리기를 빌어 비가 내렸다는 이야기는 모두 태종대가 국가 안녕을 비는 기원의 성소였음을 말해준다.

태종대는 영도뿐만 아니라 부산을 대표하는 해안 절경을 간직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명소가 함께 있는 천혜의 관광지이다. 이곳은 그야말로 난대에서 온대로 이어지는 다양한 식생을 지닌 울창한 숲과 해식절벽, 반딧불이, 공룡 발자국, 보라매 서식지 등 풍부한 자연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명승지이다.

태종대는 이처럼 천혜의 자연생태자원일 뿐만 아니라, 신라의 태종무열왕과 조선의 태종이 관계된 설화를 지니고 있는 공간으로 역사문화의 스토리가 복합되어 있는 부산을 대표하는 명소이다.

출처 : <보물섬 영도 이야기> / 사진 :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대 촛대바위



국가계약예규 개정시행

기획재정부에서는 9월 21일 자로 「PQ심사요령」 및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를 개정·공포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PQ심사요령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41호, 2015.9.21.】

1. PQ심사 신인도 재해율 평가 개선

- (1) 재해율 가점 축소
 - (현행)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 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 2점 가점
 - (개정)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 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 1점 가점
- (2) 업체의 재해예방노력 실적 가점 신설
 - (신설)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 1점 가점

3. 협상에 의한 계약의 공정성 제고방안 마련

(신설) 협상에 의한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별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등

4. 시행일자 : 2015. 9. 21. 부터

(PQ재해율, 협상에 의한 계약은 10월 1일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건설 법령정보 ⇒ 예규·지침·고시·통첩에서 확인 가능하다.

2. PQ, 턴키공사 등의 손해보험 가입주체 변경

(현행) 계약상대자 ⇒ (개정)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

지방계약예규 개정시행

행정자치부에서 10월 1일 자로 실적공사비를 표준시장단가로 변경하고 공사원이 계산 시 관급자재의 보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경비에 계상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개정하고 10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27조, 2015.10.1.】

1. 실적공사비의 표준시장단가로 명칭 변경

- 표준시장단가는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해 축적된 단가임



2. 공사 원가계산시 관급자재에 대한 간접비 반영

- 관급자재의 보관 및 관리 등 소요비용을 경비에 계상

3. 시행일자 : 2015. 10. 12.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신설) 협상에 의한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별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등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건설 법령정보 ⇒ 예규·지침·고시·통첩에서 확인 가능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분쟁조정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위 제재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을 개정하고 2015년 10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34호, 2015.9.30.】

1. 주요 내용

- 가. 분쟁조정 협의회 신고대상 범위 확대
- 건설 : (현행) 원사업자 시평 50위 미만
(개정) 원사업자 매출액 1조 5,000억 원 미만
- ※ 시평 50위 기업 연간매출액이 약 6,000억원임을 고려 시 2.5배 확대
- 나. 원사업자의 채무불이행인 대금 관련 사건 분쟁조정 협의신청 가능
- 하도급대금·선급금 미지급, 어음할인료 및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 수수료 미지급 등 그 기본적 성격이 원사업자의 채무불이행인 대금 관련 사건은 원사업자의 매출액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 먼저 분쟁조정을 통해 처리될 수 있도록 함

- 다. 법 위반 행위 자율 점검·시정 유인 강화
-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이전 자진시정 및 피해구제 조치 완료 시 하도급법상 제재대상 배제
- 라. 직불 시 원사업자의 조치(기성고 확인 등)이행 기한 구체화
- (현행) 지체 없이
(개정) 수급사업자 요청일로부터 5일
- ※ 원사업자가 파산 등 비정상적인 경우는 15일

2. 시행일자 : 2015. 10. 15.부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시행

국토교통부에서는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하고 2015년 10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05호, 2015.10.19.】

1. 주요 내용

- 가.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 반영(제3조 제3항)
-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특약의 효력을 부인
 - 수급인이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 도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 나. 발주자의 변경계약서 미교부에 따른 효과 부여(제4조제4항)
- 발주자가 추가·변경공사를 구두 지시할 경우 원도급자의 서면 확인 요청에 대하여 15일 이내의 서면 회신을 의무화하고, 기한 내 미회신 시 통지 내용대로 공사내용 추가·변경 간주

- 다. 사용승인 이후 기간에 대한 수급인의 지체상금 공제(제30조제2항)
- 인허가기관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 이후 기간은 공사목적물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지체상금 산정일수에서 제외
- 라. 지체상금률을 공공공사 수준으로 구체화(제30조제4항)
- 당사자 간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공공공사 계약체결 시 적용되는 지체상금률에 따르도록 명시
- 마. 당사자 일방이 분쟁조정 신청 시 피신청인의 참여를 의무화(제41조 제2항)

2. 시행일자 : 2015. 10. 19.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국토교통부에서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2015년 11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령 제245호, 2015.11.2.】



1. 주요 내용

-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3억원 미만에서 4억원 미만까지 확대(제13조의 2)

현 행	개 정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에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로서 공종 간의 연계정도가 낮고 안전·교통·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사를 말한다.	4억원

2. 시행일자 : 2015. 11. 2.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시행

국토교통부에서 11월 16일 수의계약 가능금액 상향, 적격심사 평가표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정·시행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2015.11.16.】

1. 수의계약금액 상향·대상 확대(제4조 제3항, 별표2)

(현행) 200만원 이하 ⇒ (개정) 300만원 이하

2. 입찰정보 변경계약 제한(제21조 제2항, 제29조 제2항)

– 낙찰자 결정 이후 계약체결 내용에 대해 낙찰자와 계약가격을 협상하여 변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낙찰자와의 계약은 입찰정보 및 낙찰금액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토록 규정

3. 제한경쟁입찰의 제한요건 완화(제4조 제2항, 별표1)

(사업실적) 최근 3년간 계약 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기술능력) 기술보유(공법, 설비, 성능 등) 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제한



4.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개선

- 가. 지역업체 우대를 위한 지원서비스 능력 점수 도입(5점 가점)
- 나. 장비보유 평가시 보유 외에 장비임대확인서 제출 가능
- 다. 기술자 보유 평가시 기능사 추가
- 라. 신용평가등급 평가시 배점기준 도입 등

5. 시행일자 : 2015. 11. 16.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기획재정부에서는 12월 29일 자로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및 계약보증금의 전자적 납부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공포하고 3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626호, 2015.12.29.】

1.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 수요기관이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자체 전자시스템을 이용

2. 계약보증금 등의 전자적 납부

-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납부. 다만,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현금 납부 가능함

3. 시행일자 : 2016.3.30.부터

-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방계약예규 개정·시행

행정자치부에서는 12월 29일 자로 소규모 복합공사의 적격심사 방법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평가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개정·공포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34호, 2015.12.29.】

1. 소규모 복합공사(3~4억) 적격심사 평가방법 도입

- 재무비율 평가 시 업종별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해 합산하여 평가
- ※ 실적평가는 현행 기준과 동일

2. 시행일자 : 2016.1.11.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35호, 2015.12.29.】

1. “계약담당자 주의사항”에 입찰참가 진입장벽 금지사례 구체화

- 관련 법령에 공사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물품계약으로 발주하는 사례
- 총 공사비의 70% 이상 독창적인 디자인이 반영되지 않은 공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는 사례

2. 주계약자 공동도급 평가기준 명확화

- 부계약자 추정가격에 대한 시공비율 ⇒ 분담가격

3. 시행일자 : 2016.1.11.부터

-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예규·지침·고시·통첩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적극 활용 안내

조경식재공사 특수성을 반영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시행 안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경식재 공사의 특수성을 반영한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12월 31일 제정·시행했다.

근번 제정된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전문건설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경식재공사에서 주로 발생하는 불가항력 사항, 유지보수 비용 전가, 식재 후 인도시기 불분명 등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조경공사의 특수성을 반영한 조경식재공사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조경업계의 불합리한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내용

가. 계약 중의 금지행위 구체화(제7조)

- 부당위탁 취소, 인수거부 및 지연, 부당반품, 경영간섭,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 행위 금지

나. 지급자재 등 인도거절 권한 부여(제15조)

- 부적합 지급자재에 대해 인도거절 및 재검사 요청권한 부여

다. 유지관리 주체 명확화(제29조)

- 식재 후, 기성검사가 완료된 목적물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은 원사업자에게 부여
 - 유지관리업무 위탁 시 유지관리비용은 하도급대금과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

라. 손해배상 부담 주체 구체화(제30조)

- 목적물(기성부분) 지연인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 부담

마. 지체일수 불산입 사유 확대(제31조)

- 조경식재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한해, 염해, 이상고온, 기상이변 등의 불가항력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바. 공사중지 권한 확대(제32조)

- 지급자재 또는 대여품 등의 지급 지연 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중지 권한 부여
- ※ 기존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선급금, 기성금 미지급 외에 추가공사 대금을 미지급한 경우 공사 중지 요청 권한 부여

사. 하자담보책임 면책 규정 확대 및 입증책임 주체 신설(제35조)

- 하자담보책임 면책 사유 신설
 - 지급자재, 식재기반 등의 불량 또는 기준 미달인 경우
 -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 발주자(사용자)의 유지관리 행위가 결여된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재난 및 기타 불가항력인 경우
- 유지관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지 않은 경우 발생한 하자에 대한 입증 책임을 원사업자에게 부여

아. 하자담보책임 기간 기산일 명확화(제36조)

- 식재 완료 후, 사용승인 받은 날 또는 목적물 인수한 날(준공검사 완료일)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
 - 수급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만 보수
-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부담해야하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수급사업자에게 강요 금지

2. 제정일자 : 2015.12.31

-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예규·지침·고시·통첩 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 개정시행

기획재정부에서는 12월 31일 300억원 이상 공사의 최저가낙찰제 폐지 및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를 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29호, 2015.12.31.】

1. 300억 원 이상 공사의 최저가낙찰제 폐지 및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 가격 외에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 심사
- 저가 하도급 방지를 위한 하도급계획 심사제도 도입
- ※ 개별 하도급계약금액이 예정가격의 60% 이상, 원도급 금액의 82% 이상 여부를 점검해 위반 시와 사후 불이행 시 감점

2.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17.12.31.까지 일몰 연장

3.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근거 마련

- 입찰금액의 5%(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 이내에서 입찰공고 시 지정

4. 시행일자 : 2016.1.1.부터

-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회원전용공간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건강 주의보 발령!



한파가 이어지고 각종 모임이 많은 겨울철은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계절입니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은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으로 더욱 몸에 균형이 깨지기 쉬운데요. 찬바람도 두렵지 않은 겨울철 건강관리 비법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해 생활속 실천으로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탈모, 왜 생길까?

중년 남성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탈모가 이제는 남녀노소를 불문한 현대인의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생활, 지나친 다이어트, 환경적 요인 등으로 젊은 여성에게도 탈모는 이제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건잡을 수 없이 적어지는 머리숱, 더 늦기 전에 머리카락 사수하는 탈모 예방법은 무엇일까요?

탈모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평소 머리카락보다는 두피 건강에 집중해보세요. 꾸준한 두피 팩으로

영양을 주고, 머리를 감고 난 후에는 물기를 완전히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전에 꼼꼼히 빗질을 해주면 두피에 좋은 자극을 주게 되어 도움이 됩니다. 과도한 난방이나 수분 부족도 두피에 악영향을 끼치니,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적절한 습도 유지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외에, 두피 예방에 좋은 음식으로는 검은 콩, 아마씨, 들깨, 현미 등이 있습니다. 특히 현미는 풍부한 미네랄을 지니고 있어 멜라닌 생성을 증가시키고 탈모를 예방하는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손발이 뽀뽀 수족냉증

두꺼운 털장갑과 튼튼한 방한신발로 무장해도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한 수족냉증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고충입니다. 흔히 수족냉증을 겪는 사람들은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없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데, 단순히 추위에 민감해서 생기는 질환은 아닙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나 호르몬 변화가 추위와 같은 외부 자극과 만났을 때 교감신경이 예민해져 혈관이 수축하면서 손발에 혈액 공급이 부족하게 되어 수족냉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원인은 다양하지만 아직 부족한 치료법이 없는 게 사실이므로, 단순히 손발이 차다고 해서 근거 없이 영양제나 혈액순환 개선제 섭취 등으로 선불리 치료에 나서면 안 됩니다.

수족냉증이 의심된다면 먼저 손발뿐 아니라 몸 전체를 따뜻하게 하려는 생활 습관을 길러보세요. 외출 시 두꺼운 옷 한 벌보다는 얇은 옷 여러 벌을 겹쳐 입고, 방한용품으로 바람 쐬 틈을 모두 막는 것이 좋습니다. 거리를 걸을 때도 그늘보다는 햇빛이 비치는 쪽 위주로 다니고, 흡연자는 담배를 꼭 끊어야 수족냉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운동은 심신의 안정감을 찾아주므로 꾸준히 하면 도움이 되고, 혈관을 수축시킬 수 있는 편두통약이나 혈압약은 의사의 처방 없이는 함부로 먹지 말아야 합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감기와 독감

흔히들 감기가 심해지면 독감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독감은 감기와는 다른 별개의 질환입니다. 감기는 리노 바이러스나 아데노 바이러스 등에 의해서 사계절 내내 걸릴 수 있으며, 대부분 1주일 이내에 증상이 완화됩니다. 그러나 독감은 주로 겨울철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해 생기며, 열과 함께 심한 근육통이 생기는 등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독감 예방접종을 했더라도 모든 감기가 다 예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돌연변이를 잘 일으키고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매해 예방접종을 해야만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기는 모든 병이 그렇듯 예방이 최고의 방법이고, 생활 속 몇 가지 수칙만 잘 지켜 개인위생에만 신경 써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충분한 수면과 영양 섭취가 꼭 필요합니다. 연초에 이어지기 쉬운 술자리에서 과음하는 것은 금물이고, 흡연도 새해를 맞아 끊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또한, 공기가 건조해지면 기도 역시 건조해져 감기에 걸리기 쉬우므로 적절한 습도(40~60%)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급격한 체온 변화에 주의해야 하는데, 샤워할 때도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하고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계약보증 시 특정 보증기관의 보증서 요구 금지 안내 및 실태조사

계약보증 시 특정 보증기관의 보증서 요구는 부당한 특약에 해당!!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공사 계약 시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서울보증 등 특정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요구하는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 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에 따른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강요'에 해당될 수 있다며, 각 건설 관련 단체에 통보했다.

이에 부산시회는 10월 22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종합건설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 시 특정 보증기관(서울보증 등)의 계약보증서를 요구할 경우 상기 내용에 따라 적극 대처하여 그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안내했다. 또한, 10월 22일부터 30일까지 관련 사례(수급인, 하수급인, 보증종류, 보증기관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협회는 향후 전국 회원사의 조사결과를 취합하여 관련 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적극 활용 안내

해외건설시장의 건전한 하도급 질서 조기 정착

국토교통부에서는 해외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 하도급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업하여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14.7.)하여 시행하였다.

해외건설 현장에서의 불공정계약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국내 표준하도급계약서 수준의 하도급자 보호규정을 포함하고 현지법인설립 강요 금지, 과도한 보증요구 및 보증기관 지정 금지 등 해외건설업의 특수성이 반영됐다.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해외 건설시장에서도 국내 건설업체 간 하도급거래는 하도급법이 적용된다는 인식을 확산해 중장기적으로 해외건설에서의 하도급거래질서 정착 및 불공정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회원사들의 공정거래에 대한 인식 전환 및 해외 건설시장의 건전한 하도급 질서 조기 정착을 위해 해외진출 시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회원사에 안내하였다.

- ※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부산시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회원전용공간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등에 따른 제재처분 유의

건설공사대장통보 등 건설업자의 의무사항 준수 위반에 따른 제재처분 유의 안내

부산시회는 그동안 회원사에 건설공사대장통보 등 건설업자로서의 의무사항에 대해 수차례 안내하며 과태료 처분 등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숙지를 당부하였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업체의 의무사항 준수가 여전히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각종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건설업체를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선별한 후 각 지방자치단체 및 등록관청에 행정조치를 통보함에 따라 최근 이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는 회원사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부산시회는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차 안내하였다.

〈건설산업정보망(KISCON) 분석 대상 건설업자의 의무사항〉

내 용	분석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법 제22조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억원 이상 원도급공사, 4천만원 이상 하도급공사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통보 - 제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3호 : 시정명령(※ 계약기간 종료시에는 즉시 과태료 부과)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과태료(1차 : 100만원, 2차 : 200만원, 3차 이상 : 400만원) 	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법 제34조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4호 : 시정명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8호 :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000만원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법 제68조의3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4호 : 시정명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8호 :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000만원 ○ 불법하도급(법 제16조, 제25조, 제29조, 제83조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의 과징금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 제16조(시공자격)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경우 ②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 등록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재하도급 포함)한 경우 ③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 에게 하도급한 경우 ④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경우 ⑤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승낙 없이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⑥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⑦ 영업정지 중 건설공사를 도급하거나 하도급 받은 경우(등록업소)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5px;">※ 행정형벌 : ② ~ ⑦ 항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제4호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음.</p> </div>	매월

2015년도 인정기능사 경력증 발급 및 활용 안내

우리 협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 비고1 라목에 의거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체에서 현장 기능경력이 5년 이상인 기인(일용근로자 포함)을 대상으로 소정의 서류심사와 기능심사(시공)를 통해 인정기능사 경력증을 발급하고 있다.

인정기능사 경력증을 발급받은 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자로 활용됨은 물론 인정기능사 경력증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이 있을 경우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공사에 현장기술자(현장대리인)로 배치가 가능하며,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경력증 취득 후 바로 현장기술자로 배치할 수 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우리 협회에서 발급되는 인정기능사 경력증 소지자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하며, 자격지수·학력지수·경력지수 등으로 평가하는 건설기술자 역량평가에 의해 해당 분야 초급기술자로 기술자 등급부여가 가능해졌다. 건설기술자 등록 및 등급부여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협회에서 시행하는 인정기능사 경력증 발급 심사는 매년 2회 이루어지며, 2월과 6월에 서류심사 접수를 받고 있다.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품목 지정 공고

우리 협회에서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품목의 지정 축소를 중소기업청,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다. 이에 지난 12월 31일 중소기업청에서는 조경식재 등 9개 전문건설업종 관련 공사용 자재가 축소되는 내용으로 지정내역을 공고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외 품목

- 식생매트, 인조잔디, 어린이 놀이시설 탄성포장재, 유리

2. 수립 근거

- 공원체육시설, 자연석 판석, 승객용 엘리베이터, 신발장, 타일, 합성수지제(문, 틀, 창)는 공공분양주택 제외, 특수페인트는 도로표지용 5종 제외, 금속제창은 20층 이상 AL 커튼월 제외, 체육시설 탄성포장재는 국제규격 제외 등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회원전용공간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건설현장 노동조합 단체교섭 요구 시 업무처리 요령 안내

최근 일부 지역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가 타 지역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나, 다수의 회사에서는 경험부족 등으로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회는 11월 26일 회원사에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및 분쟁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 집단적 노사관계(단체교섭 요구 시 업무처리 요령)」를 제작하여 회원사에 안내했다.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회원전용공간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건강보험·국민연금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 안내

부산시회는 12월 7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 누락으로 공단의 사업장 지도점검 시 건강보험·연금보험료를 소급·추징당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안내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산업의 일용근로자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업은 타 산업과 달리 건설현장을 건설업 본사와 별도의 사업장으로 분리하여 적용하므로 건설현장별로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한 건설현장에 한하여 당해 현장에서 1개월간 20일 미만 근로한 건설일용근로자는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지 않은 건설현장에서 1개월간 20일 미만으로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건설업 본사 소속 가입대상자로 적용되어 자격취득 신고를 하여야 함.

그러나, 일부 회원사에서는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지 않아도 건설일용근로자가 1개월간 20일 미만 근로하면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어 공단의 사업장 지도점검 시 보험료를 소급·추징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회원사의 주의를 당부했다.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회원전용공간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안내

부산시회는 12월 8일 고용노동부에서 건설산업의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인한 내국인력 유입 감소 및 빈 일자리 외국인력 대체 문제해결 등을 위해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정부합동으로 「제3차(‘15년~‘19년)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15년~‘19년)

1. 수립 배경

- 저가수주 등 건설업계의 왜곡된 산업구조와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인해 내국인력 유입이 지속 감소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빈 일자리 외국인력 대체 문제 해결

2. 수립 근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3. 주요 내용

(1) 성장경로별 고용지원 체계 구축

- 건설 기능인 등급제 도입 및 활용
 - 적정 수준의 임금지급 연계 검토
- 유료직업소개소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 임금대불 및 수수료 실태조사를 거쳐 개선방안 마련

(2)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성 제고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법적근거 마련
 - 민간공사 부분 확대방안 검토
- 직종별 표준근로계약서 개발·보급
 - 서면근로계약 점검 강화
- 임금지급보증제도 도입
 - 소액채당금 제도 효과 고려하여 제도 설계

- 외국인력 동포(H-2) 건설업 취업규모 탄력적 운영
 - 건설업 동포 적정규모 결정 방식 보완
- 취업등록제 위반 사업주 및 근로자 제재규정 정비
 - 취업등록제 및 방문취업 동포(H-2) 고용 사업주 제재규정 신설
- (3) 안전한 근로환경 및 사회안전망 강화
 - 고위험 현장 전담감독관 지정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 등
 - 건설기계사업주 산재보험 적용방안 검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 적용 가능 여부 검토
 - 퇴직공제 전자카드제도 도입
 - 퇴직공제 전자카드제 시범운영 실시(‘15년 하반기~‘16년)
 - 국민연금 사업장 적용제외 범위 개선 검토
 -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적용기준 개선 검토
 - 퇴직공제제도 개편
 - 퇴직공제 피공제자 범위 확대(건설기계 1인 사업자 포함)

4. 향후 계획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현장 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기본계획 지속 추진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회원전용공간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석면 해체 · 제거 공사 시 유의사항 안내

석면 해체 · 제거 공사 전 석면조사 필히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 소유주(임차인)는 반드시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석면을 해체 · 제거하는 자는 석면조사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규모 건축물 인테리어 및 보수공사 시 석면조사 제도 인식 부족으로 석면함유 건축물 등을 불법으로 해체 · 제거함으로써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회는 석면조사 및 석면 해체 · 제거 시 유의사항에 대해 회원사에 아래와 같이 안내했다.

1. 석면조사

-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은 석면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기록 · 보존하여야 한다.
- 일반석면조사 위반 시 제재사항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기관석면조사 위반 시 제재사항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석면 해체 · 제거공사

-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이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에게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
- 작업중지 명령을 위반하여 석면 해체 · 제거한 자에 대한 제재사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016년 건설업 외국인력 채용 사전 절차 안내

내국인 구인 노력 반드시 필요

정부는 건설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1월 신청 · 접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력 고용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이 필요함에 따라 부산시회는 아래의 사항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1.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절차

- 내국인 구인 노력 →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 근로계약체결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입국 후 취업교육 → 현장 인도

- ※ 고용허가 신청업체 중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장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점수 산정
-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 발급, 점수가 낮은 사업장은 대기번호 부여

2. 고용허가 신청요건

-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주(공사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 사업장)는 상기 '내국인 구인노력'을 반드시 하여야 함(공사현장별)
- ※ 내국인 구인 노력 후 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 3개월
- '16년도 건설업종 외국인력 도입 및 배정은 '16년 1월 초 실시 예정(현장별 신규 채용인원 30명 배정한다)

3. 내국인 구인 노력 방법

-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14일간 구인활동
 - 신문, 방송, 생활정보지 등 매체 활용 구인노력한 경우 7일
- ※ 근거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구인 노력을 하고도 미채용된 인원에 대하여 고용허가를 신청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음

2016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 안내

부산시회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6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에 대해 회원사에 안내했다. 2016년도 국가기술자격 정기 검정시행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세부사항은 시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공지사항에 게재하였다.

○ 기술사

회 별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응시자격 서류제출 및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방문제출)	실기(면접) 시험	합격자 발표
	인터넷			실기(면접)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제108회	1.8~1.14	1.31	3.17	3.21~3.24	4.23~5.2	5.20
제109회	3.25~3.31	5.15	6.23	6.27~6.30	8.6~8.15	9.2
제110회	7.1~7.7	7.30(토)	9.8	9.19~9.22	10.15~10.24	11.11

○ 기능장

회 별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응시자격 서류제출 및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방문제출)	실기(면접) 시험	합격자 발표
	인터넷			실기(면접)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제59회	3.4~3.10	4.2(토)	4.14	4.18~4.21	5.21~6.3	6.10(1차) / 6.24(2차)
제60회	6.17~6.23	7.10	7.21	7.25~7.28	8.27~9.9	9.23(1차) / 10.7(2차)

○ 기사(산업기사·서비스)

회 별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응시자격 서류제출 및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방문제출)	실기(면접) 시험	합격자 발표
	인터넷			실기(면접)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제1회	1.29~2.4	3.6	3.17	3.21~3.24	4.16~4.29	5.6(1차) / 5.27(2차)
제2회	4.1~4.7	5.8	5.19	5.30~6.2	6.25~7.8	7.15(1차) / 8.5(2차)
제3회	8.2~8.8	8.21	9.1	9.5~9.8	10.8~10.21	10.28(1차) / 11.18(2차)
제4회	9.2~9.8	10.1(토)	10.13	10.17~10.20	11.12~11.25	12.2(1차) / 12.23(2차)

○ 기사사

회 별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응시자격 서류제출 및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방문제출)	실기(면접) 시험	합격자 발표
	인터넷			실기(면접)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제1회	1.5~1.11	1.24	2.4	2.15~2.18	3.12~3.25	4.1(1차) / 4.15(2차)
제2회	3.4~3.10	4.2(토)	4.14	4.18~4.21	5.21~6.3	6.10(1차) / 6.24(2차)
제3회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 ※일반인 필기시험 면제자 응시 불가			5.9~5.12	6.11~6.24	7.1(1차) / 7.15(2차)
제4회	6.17~6.23	7.10	7.21	7.25~7.28	8.27~9.9	9.23(1차) / 10.7(2차)
제5회	8.18~8.30 (CBT 접수)	9.3~9.12(1차)	시행 당일	10.24~10.27	11.26~12.9	12.16(1차) / 12.30(2차)
		9.20~9.30(2차)				
		10.1~10.14				

2017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희망항목 조사

현행 품셈의 불합리한 항목, 신설·개정 필요한 항목 조사

정부는 매년 상·하반기 2회(7월, 12월)에 걸쳐 그동안의 설계 및 시방기준의 변화와 일반화된 공법 중 공사비 산출기준이 없는 항목을 발굴, 표준품셈을 개정해 발표하고 있다.

표준품셈 개정은 현행 품셈에서 불합리한 항목이나 신설이 필요한 항목을 발굴하여 현장 실사를 통해 품을 도출하고, 표준품셈 심의위원회(한국건설기술연구원)를 거쳐 최종 개정·확정된다.

한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2017년도에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대한 개정 희망항목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에 부산시회는 현행 표준품셈 중 불합리한 항목, 신설·개정이 필요한 항목을 발굴하기 위해 회원사에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안내했다.

부산시회는 회원사에서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건설공사 품의 하락을 방지하고, 현실적인 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품셈의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201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시중노임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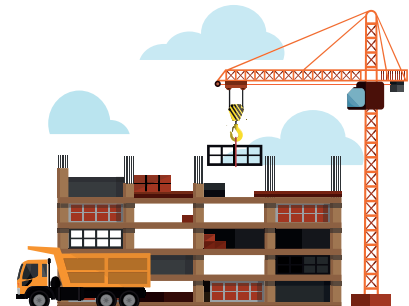
2016년 상반기 건설업 평균임금 3.2% 상승 168,571원...일반직종 159,184원

올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결과 일평균 임금이 작년 하반기에 비해 3.2% 오른 168,571원으로 나타났다.

부산시회는 건설공사 예정가격 작성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노무비 산출 근거로 활용되는 「201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시중노임단가)」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해당 조사 노임은 1일 8시간 기준(잠수부는 6시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1월 1일부터 8월까지 적용된다.

건설 주요 15개 직종 임금 현황을 살펴보면 △작업반장 117,612원 △보통 인부 94,338원 △특별인부 115,272원 △비계공 167,860원 △형틀목공 160,431원 △철근공 154,424원 △콘크리트공 148,586원 △포장공 131,508원 △조적공 135,009원 △건축목공 148,851원 △방수공 110,271원 △미장공 149,091원 △타일공 145,574원 △배관공(수도) 140,704원 △건설기계운전자 135,644원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신기술·원가정보 → 임금실태를 참조하면 되며, 개별직종별 노임단가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보면 된다.



2016년도 노동관련 각종 요율표

• 건강보험요율

년 도	보 험 료 율
2014	보수월액 × 5.99%
2015	보수월액 × 6.07%
2016	보수월액 × 6.12%

- 직장보험료 부과등급제 폐지(2007.1.1)로 보험료 산정 보수기준이 종전 "표준보수월액"에서 ⇒ "보수월액"으로 변경됨.
- 2016년도 가입자부담 3,06(50)%, 사용자부담 3,06(50)%씩 각각 부담
-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6.55%(사용자 3.275%, 근로자 3.275%씩 각각 부담)

• 연금보험요율

년 도	보 험 료 율
2014	표준소득월액의 9%
2015	표준소득월액의 9%
2016	표준소득월액의 9%

- 2016년도 가입자부담 4.5(50)%, 사용자부담 4.5(50)%씩 각각 부담

• 고용보험료율 산정기준

사업별	보험료율	산정기준
실업급여 (공동 부담)	13/1,000(1.3%)	사용자 부담 6.5/1,000(0.65%) 근로자 부담 6.5/1,000(0.65%)
고용안정사업 · 직업능력 개발사업 (사용자 부담)	2.5/1,000(0.25%)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4.5/1,000(0.45%)	상시근로자 150인 이상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개발사업 (사용자 부담)	6.5/1,000(0.65%)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업체
	8.5/1,000(0.85%)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 실업급여요율, 고용안정, 직업능력 전년과 동일

• 산재보험료율(천분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101호, 2015.12.31.】

사업종류	년 도				
	2012	2013	2014	2015	2016
일반건설공사(갑)	37	37	38	38	38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의하여 사업종류별 보험요율을 고시함.

• 노무비율(백분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408호, 2015.12.30.】

사업종류	년 도				
	2012	2013	2014	2015	2016
일반건설공사(갑)	28 (32)	28 (32)	28 (32)	27 (31)	27 (31)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 ()안은 하도급 노무비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공사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고시함.

• 건설업 월평균임금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408호, 2015.12.30.】

년 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2012	2,597,274원
2013	2,784,717원
2014	2,953,800원
2015	3,157,765원
2016	3,408,840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해 고시함.

• 최저임금 및 기준임금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111호('15.12.31.), 제2015-335호('15.11.20.)】

년도	최저임금			건설업 기준임금	
	시간급	일 급	월 급	시간급	월 급
2013	4,860	38,880	1,015,740	13,324	2,784,717
2014	5,210	41,680	1,088,890	14,133	2,953,800
2015	5,580	44,640	1,166,220	15,108	3,157,765
2016	6,030	48,240	1,260,270	16,310	3,408,840

□ 최저임금은 2016.1.1 ~ 2016.12.31까지 적용

□ 월급은 월 209시간 기준(2011.7.1부터 5인 이상 의무적용)

■ 고용보험법 제2조의2, 동법시행령 제1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2, 동법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폐업·도산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임금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등에 적용되는 기준임금 및 그 적용기간을 고시함.

• 장애인 고용의무대상 사업주 범위 및 고용부담기초액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111호('15.12.31.), 제2015-335호('15.11.20.)】

년 도	사업주 범위(이상)	고용부담기초액 (1인당/월)
2012	62억 4천 6백만원	590천원
2013	69억 0천 9백만원	626천원
2014	69억 0천 9백만원	670천원
2015	69억 0천 9백만원	710천원
2016	75억 7천 5백만원	757천원

□ 총공사실적 기준, 2016년 의무고용율 2.7%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장애인고용 의무적용대상 공사실적액을 고시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을 고시함.

• 임금채권보장기금, 석면피해분담금사업주부담금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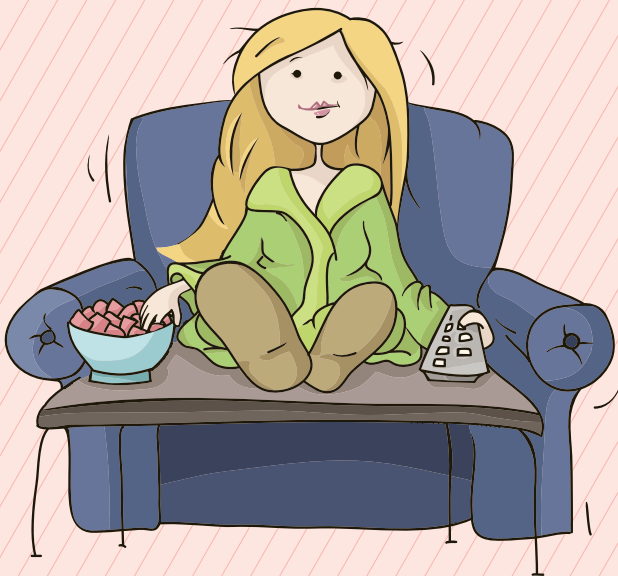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95호('15.12.24), 환경부 공고 제2015-762호, '15.12.9】

년 도	임채부담금비율(%)	석면부담금비율(%)	비 고
2012	0.8/1,000	0.05/1,000	
2013	0.8/1,000	0.04/1,000	
2014	0.8/1,000	0.04/1,000	
2015	0.8/1,000	0.04/1,000	
2016	0.6/1,000	0.04/1,000	

■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을 고시함.(2011년부터 보수총액기준)

■ 석면피해구제분담금(2011년 신설), 2010.12월부터 경감비율 감소(25%)

새해에는 꼭 보고 싶은 드라마



1. 부잣집 외동딸로 급게 자란 젊은 여자가 **씩씩** 있는 드라마
2. 사워하거나 잘 때 주인공들의 **맨 얼굴**이 나오는 드라마
3. 부모님이 반대하면 결혼을 **포기**하는 드라마
4. 여주인공이 잠자기 전에 **메이크업 좀 지우고** 자는 드라마
5. 택시 타고 **택시비 내고 내리는** 드라마
6. 주인공들이 하룻밤의 실수로 한 번에 **임신**을 하지 않는 드라마
7. 주인공이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 중**인 드라마
8. 주인공이 맘에 걸렸는데 초기에 발견돼 **깨끗이** 완치되는 드라마
9. 가정부 역할로 나오는 아줌마가 “네, 사모님” 이상의 대사를 **소화해 내는** 드라마
10. 안경을 쓴 못생긴 여자 주인공이 안경을 벗었을 때 여전히 **못생긴** 드라마
11. 실연을 고하고 울면서 뛰쳐나온 여자가 아무리 택시를 잡으려 해도 택시가 한 대도 **지나가지** 않는 드라마
12. 가난하고 힘들지만 어려움을 헤치며 밝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여자 주인공이 돈 많은 재벌 2세 남자를 **평생 못 만나**는 드라마
13. 실연을 당했거나 일이 안 풀려 모든 것을 잊고 싶어 하는 주인공이 외국으로 갑자기 유학 안 가고 그냥 **한국에 눌러**사는 드라마
14. 남자 주인공이 길을 가다가 젊고 예쁜 여자를 괴롭히는 불량배를 보고 끓는 분노를 참지 못해 불량배들과 5대 1로 싸워 결국 수적 열세를 이기지 못하고 **뒤지게** 맞는 드라마
15. 관참을 거러 철석같이 믿고 보증을 서주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돈 빌린 친지의 사업이 망하지도 않고, 잠적도 안 하며 열심히 일해 **빚 다 갚아 버리는** 드라마

우리는 왜 IBK카드인가!

우리협회에서는 회원의 복지 및 편의 제공을 위해 2014년 3월 IBK기업은행과 제휴를 맺고 협회 회원사만이 누릴 수 있는 맞춤형 특화카드인 『대한전문건설협회-IBK 제휴카드』를 출시하였습니다!

제휴카드의 혜택

01. IBK기업은행의 기본서비스 제공 외 대출금리 및 환율우대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
02. 기존 카드보다 많은 포인트적립(제휴카드 최대 0.5%, 기존카드 0.3%)
03. 세무지원 서비스(부가세환급지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 현재 IBK은행과 거래하시는 회원사는 협회로 연락주시면 바로 전문건설인 맞춤형 카드로 변경해 드립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051-633-0260)**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기업은행이 만나
전문건설 발전을 위해
**더 큰 혜택을
건설하다**

IBK Card
KOSCA



2015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 및 2016년도 시공능력평가 안내

2015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 안내

부산시회는 2015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를 2016. 2. 15.(월) 까지 방문 및 인터넷(서류 제출 포함) 접수하며,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결산 재무제표 증명원의 경우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2016. 4. 15.까지(개인의 경우 2016.5.31.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5년 실적신고는 **2015년 12월 31일 기준** 신고업체의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기술능력, 대외 신인도 등을 기준으로 하며, 실적신고 서류 제출 시 증빙서류가 정확하게 첨부된 경우에만 시공능력평가 및 입찰격차심사에 반영됩니다.
- 2015년도 전문건설공사 실적신고서 작성요령 및 실적신고 프로그램은 부산시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및 실적신고 홈페이지 <http://siljuk.kosca.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실적신고는 반드시 우리 협회 자체 실적신고 프로그램 및 인터넷 실적신고를 이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됨 (수기제출 불가)
- 실적신고 내용은 업체별 관할 세무서에 통보되어 과세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실적신고 한 내용과 세무서의 신고내용은 일치하여야 함(과세자료제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7조 및 시행령 제3조)
- 불법·불공정 행위(일괄하도급, 재하도급, 영업정지처분 위반 계약공사, 건설업등록 이전 계약공사 등)의 건설공사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할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실적신고 서류(건설공사실적, 기술자보유현황, 재무상태 등) 허위제출 시 그에 따른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함





전문건설업자의 2016년도 시공능력평가 방법 안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68호, 2014.12.31.)

$$\text{시공능력평가액} = \text{공사실적평가액} + \text{경영평가액} + \text{기술능력평가액} \pm \text{신인도평가액}$$

가. 공사실적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 산식

$$\text{공사실적평가액} = \left(\frac{\text{최근 3년간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 실적} \div \text{해당 업종별 건설업 영위기간}}{\text{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 \right) \times 70/100$$

※ 인정계수: 1년 미만=1, 1년 이상 3년 미만=건설업영위월수/12, 3년 이상=3

※ 건설업영위월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절사함

※ 최근 3년간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

$$\frac{[(\text{평가년도 이전 1차년도 공사실적액} \times 1.2) + (\text{평가년도 이전 2차년도 공사실적액} \times 1) + (\text{평가년도 이전 3차년도 공사실적액} \times 0.8)]}{3}$$

<중전> 최근 3년간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 실적 ÷ 해당 업종별 영위기간의 인정계수 × 75/100

나. 경영평가액

○ 경영평가액 산식

$$\text{경영평가액} = (\text{실질자본금} \times \text{경영평점}) \times 80/100$$

(1) 실질자본금

·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며, 실질자본금이 "0" 미만일 경우 경영평가액을 마이너스(-)가 되도록 함

예) 실질자본금 = 총자산 - 총부채

· 건설업 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되, 평가년도 직전년도에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한 경우 산정된 실질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 이하인 때에는 등록기준상 자본금을 실질자본금

(2) 경영평점

○ 경영평점 산식

$$\text{경영평점} = (\text{차입금의존도평점} + \text{이자보상비율평점} + \text{자기자본비율평점} + \text{매출액순이익률평점} + \text{총자본회전율평점}) \div 5$$

- ① 차입금의존도평점 = $\frac{\text{업계전체가중평균비율}}{\text{차입금의존도비율}} \times 100$
 【차입금의존도비율 = $\frac{\text{차입금}}{\text{총자산}} \times 100$ 】
- ② 이자보상비율평점 = $\frac{\text{이자보상비율}}{\text{업계전체가중평균비율}} \times 100$
 【이자보상비율 = $\frac{\text{영업이익}}{\text{이자비용}} \times 100$ 】
- ③ 자기자본비율평점 = $\frac{\text{자기자본비율}}{\text{업계전체가중평균비율}} \times 100$
 【자기자본비율 = $\frac{\text{자기자본}}{\text{총자본}} \times 100$ 】
- ④ 매출액순이익률평점 = $\frac{\text{매출액순이익률}}{\text{업계전체가중평균}} \times 100$
 【매출액순이익률 = $\frac{\text{법인세(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text{매출액}} \times 100$ 】
- ⑤ 총자본회전율평점 = $\frac{\text{총자본회전율}}{\text{업계전체가중평균비율}} \times 100$
 【총자본회전율 = $\frac{\text{매출액}}{\text{총자본}} \times 100$ 】

5개 비율평점 (①+②+③+④+⑤)을 더하여 5로 나눈 것을 경영평점으로 함

- 각각의 평점이 3점을 초과할 때 “3”, 3 이하인 때에는 각각 “3”으로 함
- 업계전체가중평균비율은 이자보상비율, 자기자본비율 및 매출액순이익률 중 “0” 이하인 비율을 제외함
- **경영평점이 0 미만일 경우 경영평가액은 마이너스(-)가 되도록 평가**

(3) 공사실적평가액이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

-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의 ±6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 이상인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의 ±6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중전>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75/100
 경영평점 = (유동비율평점 + 자기자본비율평점 + 매출액순이익률평점 + 총자본회전율평점) ÷ 4**

다. 기술능력 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산식

$$\text{기술능력평가액} = \text{기술능력생산액}(\text{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times \text{보유기술자 수} \times 30/100) + \text{퇴직공제불입금} \times 10 + \text{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액}$$

(1) 기술능력생산액

- 실질자본금의 2배 또는 공사실적평가액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함
- 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전문건설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총수로 나눈 금액
- 보유기술자 수 : 매 연도 말 현재 해당업종의 건설업 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 수로 하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로서 초급기술자인 경우에는 초급기술자 수에

1, 중급기술자인 경우에는 중급기술자 수에 1.15, 고급기술자인 경우에는 고급기술자 수에 1.3, 특급기술자인 경우에는 특급기술자 수에 1.5, 그 밖의 기술자(「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 중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기능사, 기능사보로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그 기술자 수에 1을 각각 곱함

<중전> 보유기술자 중 기술사인 경우 1.7

(2) 퇴직공제 불입금 × 10

- 퇴직공제불입금은 전년도 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공제부금으로 불입한 금액

(3) 기술개발투자액

-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해당 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 발생 명세상의 금액 중 건설업에 실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실질자본금과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50 중 큰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라. 신인도 평가액

신인도 요소별 평가액의 합계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 30/100을 초과할 수 없음

(1) 신기술의 지정, 우수건설업자 지정된 업체, ISO 삭제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인 경우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연차별 가중평균금액의 2/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함
- 이 경우 동일 분야에서 2개 이상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함

(2) 건설업 영위기간

- 동일업종의 전문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함

(3)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업체

- 직전영업연도에 법제82조제1항1호, 제2항제5호 및 법제83조제10호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최근 3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정지기간(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에 상응하는 영업정지 기간)인 월수를 곱한 금액을 뺀
-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1호(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할 때) 제2항제5호(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惹起)하여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4) 기준재해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6호)

- 직전영업연도 중에 평균재해율의 1~2배 이내의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의 경우 최근 3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3/100을 빼고, 평균재해율의 2배를 초과한 업체의 경우 최근 3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5/100을 뺀다.
- ※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 평가 시 공사실적액의 감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5) 부도업체

- 최근 3년 이내에 부도가 발생한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6)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 처리실태 우수업체

- 공사 시공상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거나 불량한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2/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뺄 수 있음
- ※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 평가 시 공사실적액의 증액 또는 감액요청이 있는 경우

(7) 국내인력을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건설업자

-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금액을 더할 수 있음
-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8) 건설공사 실적 등의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허위제출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시공능력 평가 시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9) 상습체불업체 (신설)

- 법 제86조의4 및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전년도에 상습체불건설업자 또는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건설업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10) 건설기술자교육 이수한 자 (신설)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평가기준이 직전년도에 건설기술자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술자 1인당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음

마. 기타

-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업자의 당해연도 시공능력 및 다음연도 시공능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경영평점은 이를 "1"로 한다. 다만, 건설업을 영위하던 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하거나 건설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이미 평가한 경영평점을 적용할 수 있음
- (2) 2 이상 건설업을 겸업하는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업종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3) 산정한 시공능력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0으로 한다.

유권해석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관련

【질의】

적격심사 대상 1순위 입찰자의 점수가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된다는 사실을 적격심사 전 입찰자 및 발주기관이 상호 확인하고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입찰자가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 사안이 종료된 상황에서, 발주기관에서 입찰자가 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다는 것 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4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 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제4절 "3"에서는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위 시행령 규정상 "정당한 이유"란 천재지변 또는 예기하지 못한 돌발사태 등을 포함하여 명백히 객관적인 사유로 부득이 계약 이행을 하지 못하거나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2. 질의와 관련하여, 입찰자의 점수가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발주기관에서 인지(실적증명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통해 적격통과 점수 미달을 확인한 경우)하고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을 요구하여 입찰자가 이에 따라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이러한 경우 입찰자의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하여 발주기관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것은 발주기관에서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거】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2252, 2014.6.20.



발주처의 계약상대자 의사에 반한 선금지급 강요 관련

【질의】

1. '14.1.10. 선금금 과다지급 개선을 위해 신설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을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금액대로 선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재정조기집행 등을 이유로 발주기관 담당 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 신청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계약상대자가 선금사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①계약상대자가 "선금포기 관련 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②발주기관에 선금신청을 "0원"으로 신청하여야 하는지? 또는 ③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을 상대로 어떠한 신청행위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회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을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제1항) 따라서, 선금은 계약상대자가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고 발주기관이 검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가 선금사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금을 신청하지 않을 수 있으며, 편의상 선금의 청구여부(선금신청을 "0원"으로 신청, 포기 관련 문서 등)를 발주기관에 미리 알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1910, 2014.3.28.

건설판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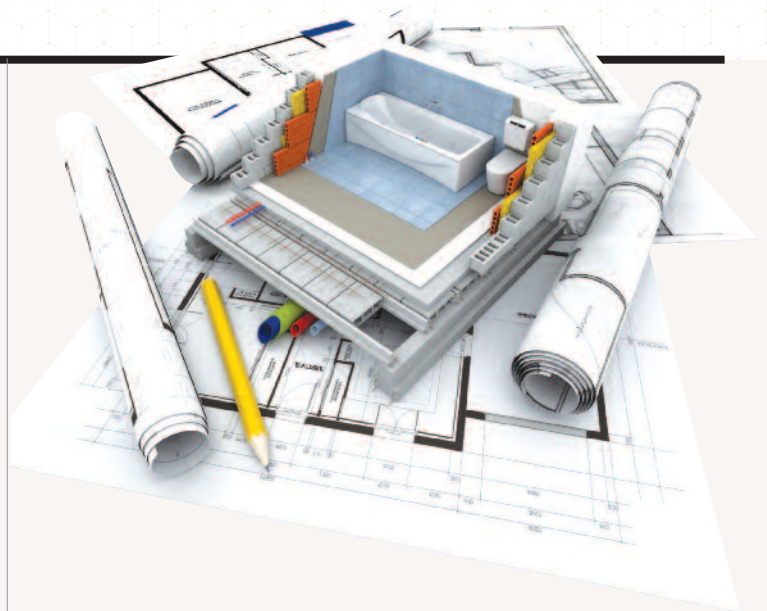
대법원 2008.2.29 선고 2007 다 54108 판결 [추심금]

【판시사항】

1. 공사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을 함께 체결하면서 도급인,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은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입회하에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원수급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이로써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기 위한 요건 및 그 범위

【판결요지】

1. 공사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을 함께 체결하면서 도급인,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은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입회하에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원수급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당사자들의 의사가 위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수급인의 도급인에게 직접 그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원수급인은 공사대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원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인에게 양도하고 그 채무자인 도급인이 이를 승낙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채권양도에 대



한 도급인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도급인은 위와 같은 채권양도와 그에 기한 채무의 변제를 들어서 원수급인의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반면, 당사자들의 의사가 하수급인이 위 각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행 내지 완료한 범위 내에서는 도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원수급인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압류명령의 통지가 도급인에게 도달하기 전에 하수급인이 위 공사를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하였는지 여부나 그 기성고 정도 등에 따라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하수급인의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달라진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는 바로 그 하도급대금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회원사 질의·응답

★ 1.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된 공사를 낙찰 받아 참여 중에 있음. 최근 주계약자가 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여 부계약자 시공부분 대부분을 주계약자 시공부분으로 변경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음. 관련 규정 및 대응방법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에서는 설계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구성원은 주계약자를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에 따라 신규 물량의 증감분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분담시공과 관련이 있는 구성원이 시공하되,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계약자가 시공토록 규정하고 있음.

2.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를 종합건설업체가 원도급 받아 발주자의 서면승낙 후 다시 종합건설업체에게 하도급 주었음. 당사는 그 중 6억원가량을 재하도급 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위반한 불법 재하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종합건설업체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경우 다른 재하도급과 달리 발주자, 수급인의 서면승낙 없이도 재하도급 가능하며, 실적 신고도 가능함. 다만, 재하도급을 준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발주기관에 하도급통보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종합건설업체(하도급사)는 과태료(1차:100만원, 2차:150만원, 3차:150만원) 처분을 받을 수 있음.

3. 발주처로부터 전문공사를 원도급 받은 경우 동일한 전문건설업종으로 하도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에서는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발주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이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함.
- 이를 위반한 건설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6조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추정가격 2억 5천만원의 공공공사 적격심사 시 신규업체 경영상태 평가 방법은?

- 신규업체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로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해당공사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인 공사는 건설업 등록 시 제출된 재무재표로 평가할 수 있음.
(※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3>경영상태평가방법)

5.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이 아닌 공사의 경우 건설공사대장을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 종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는 건설공사대장을 영업소에 비치토록 의무화하고 있었으나, 2010.6. 29. 해당 법령이 개정되어 건설공사에 관한 기재사항을 건설공사대장 또는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기재토록 개정되어 영업소 비치의무는 폐지됨.
-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원도급공사의 경우 1억 원 이상, 하도급공사의 경우 4천만원 이상일 경우 건설산업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건설공사의 기재사항을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통보토록 하고 있음.
※미통보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1차:100만원, 2차:200만원, 3차 이상:400만원)

★ 6. 현장에서 장비 및 도로통제 등을 위한 신호수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 및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6,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2조의3에 따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37호, 2014.10.22.) 별표8.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불가내역에 따라 신호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 그러나,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 제101조, 동법 시행규칙 제59조, 제60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2호, 2015.4.23.)에 따라 신호수, 유도등 등은 안전관리비로 계상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현장 내 작업자, 인부 등의 재해예방을 위해 사용 가능하며, 안전관리비는 건설현장 내외의 안전확보를 위해 사용 가능함.

7.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된 공사에 부계약자로 참여하고자 함. 그러나, 부계약자 시공비율이 31.8%(2,672,670,000 원)로 시공능력평가액이 5억원가량 부족한데 적격심사 시 시공능력평가액 부족부분에 대한 감점사항은 없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에서 적격심사 시 시공능력평가액 부분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사. 3)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종합공사로서 30억원(전문·그 밖의 공사는 3억원)이상인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8.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가능한지 여부?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후 90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설계변경이 가능함. 다만, 노임단가의 평균등락률이 7% 이상 증감, 표준시장단가의 평균등락률이 7% 이상 증감, 계약기간이 90일 이내로써 자재구매가격이 5% 이상 증감 등의 사유일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조정도 가능함.

9. 하도급 받은 공사의 부대공사에 특허공법이 적용되어 있을 경우 재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하기 위한 요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발주자 및 수급인의 사전 서면승낙
- ② 재하도급 할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20 이내
- ③ 특허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 그 특허를 출원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또는 하도급받은 공사 중 주된 공사에 부수되는 종된 공사로서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기능인력, 특수자재의 설치 또는 재료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공사를 그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한 경우

④ 재하도급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거나 수급인이 재하도급 공사대금 직접 지급(수급인,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 서면 합의)

⑤ 건설기계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자재대금, 근로자 임금을 수급인이 연대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업자 및 자재업자, 참여 노무자들에게 제시할 것.



10.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으로 기능사 2명을 보유 중인 데 적격심사 시 기술자 보유 증빙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증 및 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함.

- 또한, 기술능력이 일시적으로 미달(50일 이내)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않음.

11. 하자보증서의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비용 발생부분까지 하자보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또 시공사인 종합건설업체가 부도가 발생되었을 경우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업체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경우 하자보수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실제 하자보수 시공에 필요한 전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원도급(종합건설)업체의 부도 발생 시 발주자는 종합건설업체가 제출한 하자보증기관에 하자보수를 청구하게 되면, 해당 보증기관에서는 하도급업체의 시공분에 대해 대위청구권이 있으므로 해당 전문건설업체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경우, 하도급업체는 하자보수시공의 의무가 발생됨.

12. 발주자, 원도급사, 하도급사간에 하도급대금을 직불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공사 시공 중 원도급사의 부도로 원도급사의 공사대금에 대해 압류가 들어왔을 경우 발주자로부터 하도급사의 시공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발주자, 원도급사, 하도급사 3자 간의 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의 채권양도에 대한 발주자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발주자는 채권 양도와 그에 기한 채무의 변제를 들어서 원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하도급대금을 우선하여 발주자로부터 직불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관련 건설판례 : 대법원 선고 2007다54108, 2008.2.29

미래산업을 바꿀 혁신기술

급변하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몇 년 후의 세상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지식, 정보, 창조
 시대에서는 그 예측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 무엇이 기초이고 표준일까? 끊임없이 변화
 하 사회에서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함께 산책해 본다면 그 재미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게
 공상이라도 좋다. 인류의 발전은 공상이 현실로 나타남으로써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제4편 : 핀테크>

• 핀테크란?

-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기술을 결합한 각종 신기술을 뜻한다.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 서비스와 이에 걸친 전반적인 산업의 변화를 통칭한다. 쉽게 말해, 영업점 중심의 전통적 금융 서비스에서 벗어나 소비자가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활용해 간단한 송금이나 결제는 물론 클라우드 펀딩, 자산 관리까지 아우르는 대안 금융 서비스를 일컫는다.

핀테크 시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모바일 기술이 급성장하면서 함께 발달하였다. 특히, 뉴욕, 런던, 실리콘밸리 등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 및 확장되었다. 구글은 2011년 구글 월렛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애플은 2014년 애플페이를 개시했다.

• 핀테크의 대표적인 예

- 모바일, SNS, 빅데이터 등 새로운 IT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존 금융기법과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기반 금융서비스 혁신이 대표적이다. 최근 사례로는 온라인 개인자산 관리, 모바일뱅킹과 앱카드 등이 있다.

또한 혁신적 비금융기업이 보유 기술을 활용하여 지급결제와 같은 금융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현상이 있는데 페이코, 애플페이, 알리페이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핀테크 활용 분야

- 핀테크는 비단 지급결제 서비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수수료가 저렴하고 이용이 편리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제·송금 영역, 사용자들이 투자와 대출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 기반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금융 플랫폼 영역 △개인과 기업 고객의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금융 행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 데이터 분석 영역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더욱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금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각종 솔루션을 제공하는 금융 소프트웨어 영역 등 매우 다양하다.





• 핀테크 산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 핀테크는 우리 삶 전반에서 금융이 가동되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 핀테크는 금융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통, 제조업 등 유관산업의 성장을 돕는다. 핀테크를 통해 세계인들이 자유롭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소비자들은 국경을 뛰어넘어 안방에서 편하게 해외 직구를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제조업체들도 해외 소비자들과 저비용으로 효과적으로 만날 수 있다.



또한, 보안 기술도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한 핀테크가 전방위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안에 대한 요구도 한층 더 강해진 것이다. 핀테크 산업의 확장은 금융제도의 개혁을 동반하게 된다. 규제가 완화되면 안정성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안산업은 더 빠르고 강력하게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금융기관과 IT 업계 뿐 아니라 유통, 부동산, 제조업 등 전 산업에서 핀테크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다. 또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핀테크에 더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이다.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

우리나라에서 간편결제 서비스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기업으로는 카카오를 들 수 있다. 모바일 결제 ‘카카오페이’를 선보이며 별도 앱 설치 없이 카카오톡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간편결제 서비스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었다. 또한 삼성전자는 자사 스마트폰인 갤럭시 디바이스 사용자를 기반으로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에서 현재까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핀테크 도입기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기존 사업영역의 연장선인 결제시스템에만 핀테크를 결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서 핀테크 산업의 성장이 매우 부진하다. 또 금융업은 규제가 강하여 전자금융업자 등록요건과 보안성심사 등의 과정에서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다.

우리나라 대기업 오프라인 간편 결제 방식

기업	서비스명	결제 방식
다음 카카오	뱅크월렛카카오	바코드 스캔, NFC
삼성전자	삼성페이	MST, NFC
NHN엔터테인먼트	페이코	NFC
롯데백화점	L페이	바코드 스캔

- ▶ NFC : 복잡한 설정 과정 없이 쉽고 빠르게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기기를 연결
- ▶ MST : 마그네틱 보안 전송 기술(신용카드 단말기로 인식)



건설업 실질자본금 산정 변경 내용



한범규

선경세무회계사무실 공인회계사

국토교통부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 개정·시행(국토교통부 예규 제2014-85호, 2014. 9. 29.)에 따른 건설업 자본금(실질자본금) 인정범위 확대(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 ① 본사의 업무용 건축물 임대부분 인정범위 확대
【단서신설, 제23조6항】
- ② 매출채권 인정기간 확대 (발생일로부터 1년 → 2년) 【제17조4항】
- ③ 공사미수금의 대물변제에 대하여 2년간 실질자산으로 인정 【신설, 제17조5항】

① 본사의 업무용 건축물 임대부분 인정범위 확대

《① 본사의 업무용 건축물 임대부분 인정범위 확대》는 본사가 소유한 건축물이 임대수익이 발생하여도 실질자산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개정 전 건설업체 진단지침 제23조는 본사의 업무용 건축물 중, 건설업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사무실만을 실질자산으로 인정했었습니다. 따라서 업무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건물 전체가 건설업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면** 겸업자산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는 상당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건설업 용도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곧 겸업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겸업비율이 산출되는 문제로 이어져 공통으로 사용되는 다른 자산에도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을 부분이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 '인정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자산에도 인정받을 부분이 적어진다는' 이중고였던 것입니다.

▷ 개정된 건설업체 진단지침

제23조(유형자산의 평가) ⑥ 임대자산이나 운휴자산 등 진단대상사업과 관련이 없는 유형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보며,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가 임대자산인 경우에는 전체 연면적에 대한 임대면적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겸업자산으로 본다. **다만, 진단을 받는 자가 소유한 본사의 업무용 건축물(부속토지 포함)이 임대자산인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보며, 해당 임대자산에 대하여 진단을 받는 자 또는 타인명의로 부채(담보로 제공된 경우 채권최고액)는 실질부채로 본다.**

개정 전의 내용과 비교하면 상당한 수준의 혜택입니다. 본사가 건설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사무실의 면적이 1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100, 혹은 100만, 혹은 100억이어도 인정하겠다는 엄청난 규제완화에 해당합니다.

진단을 받는 자가 소유한 본사의 업무용 건축물(부속토지 포함)이 임대자산인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보며,

하지만 진단지침 제23조⑥항이 삭제되고 다시 추가된 내용은 아닙니다. 기존 ⑥항에 위 밑줄 친 부분, “다만,”부터의 단서가 추가된 것뿐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임대자산, 운휴자산, 진단대상사업과 관련이 없는 유형자산은 실질자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본사 건축물 외 ‘직원 숙소’ 등은 실질자산이 아니라는 것이죠.

임대자산에 대한 장부상 부채의 차감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을 보유하고 임대를 주었다면 마땅히 받은 보증금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건축물 매입 시 차입금이 발생한 경우도 있겠죠. 대출을 안고 더 좋은 건축물을 구매하는 것이,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 정도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니까요. 개정된 건설업체 진단지침은 이러한 건축물 매매 및 임대사업의 특징을 명확히 짚어내어, 부채에 해당하는 실질자산에서 차감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당 임대자산에 대하여 진단을 받는 자 또는 타인명의로 부채(담보로 제공된 경우 채권최고액)는 실질부채로 본다.

건물등기부등본에 '을' 구에 권리자 목록이 명시되어 있는데, 확인을 하는 절차는 매우 간소하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실제로 건축물로 인정 받는 실질자산 규모는 작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대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금을 발생시켜 해당 자산이 **'제한물권' 혹은 '담보물권'에 해당한다면 해당 항목 자체의 실질자산을 훼손하는 채무로, 전액 임대자산에서 차감**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건설업체 진단지침 제23조⑥항에서 말하는 점은, "건축물의 인정부분을 확대 적용하되, 차감금액을 명확히 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② 매출채권 인정기간 확대

〈② 매출채권 인정기간 확대(발생일로부터 1년 → 2년)〉안은 실재하는 매출채권에 대하여, 인정범위를 넓혀 줌으로써, 채권회수를 하지 못해 어려운 회사들에게 숨통을 트이도록 하는 규제완화입니다.

▷ 개정된 건설업체 진단지침

제17조(매출채권과 미수금 등의 평가) ④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을 경과한 매출채권과 미수금 등 받을 채권(이하 "받을 채권"이라 한다)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④항에서 바뀐 점은 1년이 2년으로 숫자만 변경된 점입니다. 하지만 매출채권 계정은 지속적으로 분식결산에 활용하는 경우가 다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혼란이 상당한 수준입니다. 또한 이를 이용한 부실자산 상품이 계속적으로 변형되어 등장하는데, 이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매출채권은 타 계정에 비해 심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아, 위 규제완화가 무리수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갑과 을의 관계에서 시공사는 보통의 경우 '을'이 되고, 이 때문에 등록기준의 문제를 '갑'에

게 전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사 '갑'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협력 하더라도, 조세에 대한 문제까지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을'에게는 더 힘든 수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장부를 양측 업체가 맞춰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이에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정산 미지급금 등이 일방의 결산서에 누락되어 있다면, 당연히 부실자산으로 구분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연말을 맞추는 계정이 예금이 아닌 기타 실재하지 않는 매출채권 상품일 경우, 기본서류(지침 제7조①1.가. 계정명세서, 계약서, 금융자료, 세금계산서, 계산서, 정규영수증, 등기·등록서류 등)를 확인한다면 금세 실체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심사의 용이성을 알 수 있습니다.

③ 공사미수금의 대물변제에 대하여 2년간 실질자산으로 인정

〈③ 공사미수금의 대물변제에 대하여 2년간 실질자산으로 인정〉역시 큰 규제완화에 해당합니다. 당사 유동성을 확보할 수 없어 해당 건물을 임대를 주어도 〈1 본사의 업무용 건축물 임대부분 인정범위 확대〉에 따라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때문에 위 언급한 **'대물변제로 인한 연쇄효과'**에 대해 유예기간과 유동성 확보 범위를 확장해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건설업체 진단지침

제17조(매출채권과 미수금 등의 평가) ⑤ **매출채권을 건물(부속토지 포함)로 회수한 경우, 그 건물은 취득한 날부터 2년간 실질자산으로 본다.**

제17조 ⑤항은 이 전 진단지침 상에는 없던 항으로써, 신설되었습니다. 범위를 한정하는 단서도 붙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신설되는 항목이 많지 않음을 고려해보았을 때, 건설업체가 겪는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의중이 보이는 항목입니다.

신규 회원가입 업체 소개

상 호(대표자)	주 소	상 호(대표자)	주 소
 (주)구덕종합개발 이 안 호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58번길 59 (연산동) T : 051-851-8214 보유업종 : 비계·구조물해체	 그린산업개발 김 철 민	부산 금정구 동부곡로15번길 83, 1층 (부곡동) T : 051-809-7355 보유업종 : 조경식재
 (주)기상건설산업 노 승 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99, 433호(구서동, 유림노르웨이아침) T : 051-582-7904 보유업종 : 강구조물	 (주)대호산업 강 윤 경	부산 금정구 금강로 575 (구서동) T : 051-583-1584 보유업종 : 상·하수도설비
 (주)블루에이치월리스 우 인 호	부산 수영구 수영로 657 (광안동) T : 051-756-5568 보유업종 : 실내건축	 (주)미래이앤지 민 창 기	부산 중구 광복로 97번길 26-2 1101호 (동광동2가, 조흥빌딩) T : 051-441-8430 보유업종 : 수 중
 미소건설(주) 양 진 숙	부산 수영구 광안로61번길 3 (민락동) T : 051-753-4192 보유업종 : 상·하수도설비	 민진석건(주) 이 준 남	부산 사하구 하신번영로 365, 146동 상가209호 (하단동,가락타운1단지아파트) T : 051-201-2428 보유업종 : 석 공
 (주)부성 안 상 석	부산 동래구 사직북로63번길 55 (사직동) T : 051-818-1551 보유업종 : 미장·방수·조적	 (주)삼강 성 원 기	부산 서구 천마로 183-1, 3층 (남부민동,삼강빌딩) T : 051-245-8222 보유업종 : 실내건축
 (주)영광이엔지 유 영 진	부산 금정구 개좌로272번길 35 (회동동) T : 051-521-3321 보유업종 : 실내건축	 (주)오방건영 최 진 록	부산 사상구 사상로425번길 35, 2층(모라동) T : 051-506-5596 보유업종 : 실내건축
 용서건설(주) 박 사 익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412, 12층 2호(하단동, 경부빌딩) T : 051-206-6433 보유업종 : 토 공	 재광건설(주) 김 은 석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길천길 53 T : 051-727-2055 보유업종 : 토 공
 지엘부(주) 한 승 기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857, 1층, 2층(감전동) T : 051-337-9691 보유업종 : 미장·방수·조적 금속구조물·창호	 창민토건(주) 김 은 주	부산 기장군 정관면 달산3길 10-1, 1층 T : 051-727-3220 보유업종 : 포 장

상 호(대표자)	주 소	상 호(대표자)	주 소
 (주)칠성이엔씨 공 해 구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청로 24 상가2층 201호 T : 051-724-1116 보유업종 : 토공, 철근·콘크리트	 (주)태극기초 김 영 속	부산 사상구 학장로 157, 3층 (학장동, 문무빌딩) T : 051-807-8104 보유업종 : 비계·구조물해체
 태봉건설(주) 이 봉 규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942, 401호 (구서동, 우남타워) T : 051-817-2003 보유업종 : 철근·콘크리트	 (주)화정 김 기 백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 204-1, 201호 (우원빌라) T : 051-723-2555 보유업종 : 철근·콘크리트

부산 전출·입 전문건설업체 현황

〈2015. 10. 1.~12. 31.〉

전출업체 현황	전입업체 현황
거경건설(주)(대표 : 정추식, 경남)	(유)금문건설(대표 : 김영달, 전북)
기산건설(주)(대표 : 유광심, 서울)	대경건설(주)(대표 : 이군희, 경남)
길보조경(주)(대표 : 남용학, 인천)	(주)비엠텍(대표 : 김기아, 제주)
(주)대성산업개발(대표 : 박대호, 경남)	(주)세종건설(대표 : 권기욱, 경남)
(주)보극이엔씨(대표 : 이승민, 대구)	(주)에이치비이엔씨(대표 : 허우삼, 경남)
(주)시원엘엔씨(대표 : 김미경, 제주)	우림조경개발(주)(대표 : 박미애, 경남)
(합)신한일산업(대표 : 우영식, 충남)	재우건설(주)(대표 : 안향숙, 대구)
한동건설(주)(대표 : 전용봉, 경남)	조양건설(주)(대표 : 박수길, 전남)
(주)한지디엔씨(대표 : 박용석, 경기)	진영종합건설(주)(대표 : 조덕래, 경남)
	(주)한림이엔지(대표 : 조복순, 울산)

부산 전문건설업체 등록현황

〈2015. 12. 31. 기준〉

지 역	업체수	등록수	지 역	업체수	등록수	지 역	업체수	등록수
중구	25	61	남구	91	129	북구	69	94
동구	61	124	금정구	208	316	사상구	102	129
서구	27	31	연제구	133	203	강서구	136	185
사하구	67	87	해운대구	194	279	기장군	178	277
영도구	23	34	수영구	96	140	합계	1,746	2,574
동래구	170	227	부산진구	166	258			

건설용어 바로쓰기

올바른 우리말 사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주위에서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생활속에서 사용되는 잘못된 언어표현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좀처럼 고쳐지지 않고 있다.

건설용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건설현장에서는 일본어식 표현이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건설현장에서 올바른 우리말 사용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주 사용되는 잘못된 일본어식 건설용어들은 알아보고 바른 우리말 표현을 정리해봤다.

건설용어			
일본어	우리말	일본어	우리말
가도	모서리	마루따	통나무
가라리	루우버	메가네	안경
가리쓰	글래스, 유리	멘시아기(계)	면고르기
가라쓰미	건성쌓기, 메쌓기	미끼샤	믹서
가리고야	헛간, 헛일간	보도	볼트
가리방	줄판	보로	걸레
가리시메	임시죄기	아미	그물, 망
가마찌	울거미	아마내기	툽니내기
가이꼬오부	개구부	오도리바	계단참
가이당	계단	오사에	누름
고오란	난간	오사에 빠데	노름퍼티
구리이시	잡석	오오바리	큰 보
구(쿠)사비	썰기	요꼬메지	가로줄눈
네다	장선	요비링	초인종
네리	비빔	우라	안(감)
노리비끼	시멘트풀칠	우라꼬미	뒤채움
누리가에	재철	이다	널
누리지	바름바탕	이모노	주물
다데메지	세로줄눈	이모노 가다	주형
다찌아기리	치울림	주꾸미	바탕몰탈
답바	높이	하께비끼	솔질마무리
사게부리	다림추	하바도매	보강근, 전단 보강근
스미(쓰미)	먹긋기, 별돌공	하찌마끼	테두리보
시끼	문지방	한빠	찌꺼기, 보조원
시다깁	하부근	호리가다	티파기, 줄파기
시다바	밑면	후깁(후꾸깁)	부근
시다지	바탕	후꾸레두	블록해지다, 부풀다
신마이	신출내기	후양	환풍기
로끼	처마	히꼬미	안옥음, 끌어당기기
마도	창	히사시	차양

인정기능사 처리절차

<p>01</p>  <p>신청서 교부 (시·도회)</p>	<p>02</p>  <p>신청서 접수 (시·도회)</p>	<p>03</p>  <p>서류심사 (시·도회)</p>
<p>04</p>  <p>기능심사 일정수립 (중앙회)</p>	<p>05</p>  <p>기능심사 일정통보 (시·도회)</p>	<p>06</p>  <p>기능심사 (중앙회, 심사기관)</p>
<p>07</p>  <p>인정기능사 인정기능사 심사위원회 심의</p>	<p>08</p>  <p>경력증 발급 (중앙회)</p>	<p>09</p>  <p>경력증 교부 (시·도회)</p>

※ 수수료 : 8만원 (서류심사 : 3만원, 기능심사 : 5만원)

신청대상자 및 구비서류

- 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체에서 건설공사 관련 분야 실무기능경력 5년(1,825일) 이상인 자
 ※ 실적신고 자료 또는 건설공사계약서 등으로 참여공사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으로 인정
- 구비서류

건설업체에 소속된 자의 구비서류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일용근로자의 구비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정기능사 경력증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경력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와 발행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 근무회사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와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공단, 고용지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 증명서 중 신청인의 소속회사 입사일이 명기되어 있는 서류 중 택 1 증명사진 2매(신청서용, 경력증발급용)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신청인, 대리인) <p>* 근무한 회사가 부도·폐업된 경우는 전문건설업 영업기간 확인서로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을 갈음할 수 있고, 근무 당시 임원 또는 당해 현장 참여 기술자 중 2인 이상이 인감도장으로 확인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경력확인서로 3번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경력확인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용근로자의 구비서류 중 4번)가 첨부되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정기능사 경력증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건설업체 임원 또는 당해 현장 참여 기술자 중 2인 이상이 인감도장으로 확인한 경력확인서(별지 제3호의 2서식)와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경력확인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원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원임을 입증하는 법인 등기부 등본 개인 인감 증명서 당해현장 참여 기술자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 현장 참여 기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국가기술자격수첩 사본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개인 인감 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증명사진 2매(신청서용, 경력증발급용)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신청인, 경력확인자, 대리인)

※ 자세한 사항 및 관련 서식은 부산사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건설업 등록·관리 ⇒ 인정기능사에서 확인 가능하다.

알아두면 유용한 생활 속 TIP



아는 것이 힘이 되는 세상입니다. 사소한 작은 정보도 나중에는 유용하게 쓰인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한번 알아두면 두고두고 도움 되는 생활 속 팁을 알려드립니다. 꼭 기억해두시고 필요할 때 요긴하게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영수증 보관법

카드 결제 후 꼭 챙기게 되는 영수증. 나중에 영수증의 정보를 확인하려고 꺼내보면 인쇄된 글자가 지워지고 흰 종이만 남아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영수증의 글자는 왜 사라져 버리는 것일까요? 이것은 영수증이 감열지라는 특수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감열지는 열에 반응하는 종이로, 열을 가한 부분만 검은색으로 변색이 되고 이 원리를 이용해 빨리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은행 번호표나 로또 복권 중이도 감열지로 인쇄됩니다. 다만, 감열지는 햇빛에 장기간 노출되거나 열, 수분에 접촉되면 쉽게 변질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오래 보관해야 하는 중요한 영수증인 되도록 사본을 만들거나 스캔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악취 없애는 방법

환기가 어려운 겨울철에는 각종 악취에 시달리면서도 마땅한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판되는 방향제나 탈취제도 좋지만,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들로도 얼마든지 악취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원두커피 찌꺼기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원두커피 찌꺼기는 냄새를 빨리 흡수할 뿐더러, 예쁜 주머니에 넣어 걸어두면 인테리어 효과도 있습니다. 단, 미리 말려 수분을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초를 잠시 켜두면 악취를 즉시 없애고 냄새가 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숯이나 말린 녹차 티백을 비치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자동차 안 냄새 제거에는 사과 반쪽을 하룻밤 동안 두면 됩니다.

유통기한 지난 치약 활용법

오래된 치약은 버리지 말고 살림 이곳저곳에 사용해 보세요. 화장실 거울, 세면대, 수전, 싱크대, 타일 틈새 등 물때가 낀 곳곳에 치약을 뿌린 뒤 문질러 주면 말끔히 청소할 수 있습니다. 치약의 연마제 성분이 세척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인데요, 다리미 밑판을 닦을 때나 은 제품의 흠집을 제거할 때도 독특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마늘이나 생선 등을 만져 손에서 냄새가 날 때도 치약을 조금 묻혀 씻어주면 쉽게 악취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흰 운동화나 피아노 흰 건반의 얼룩 제거에도 특효약이니 잊지 말고 꼭 써보세요.

KOSCA 중앙회 업무단신

▷ 2015. 10. 30.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2015회계연도 제2차 임시총회를 열고 '회장 보궐선출의 건'을 상정, 전건협 토공사업협의회장을 지낸 신흥균 후보를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선출된 신흥균 중앙회장은 2017년 10월까지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 2015. 11. 19.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에서는 국내 전문건설사의 베트남·동남아시아 진출 확대를 위해 베트남 건설협회(VACC, 회장 응웬 꾸억 히엩)와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2년마다 교대로 정례회의를 열고 양국 건설기술 정보 교환, 건설기업 간 교류·협력 지원, 한국기업의 베트남 건설 프로젝트 참여 등을 추진하게 된다.

▷ 2015. 11. 30.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에서는 제10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아름다운 동행, 미래를 위한 변화'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열린 이날 취임식에는 신흥균 신임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김동철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비롯 김한길, 한선교, 이찬열, 박덕흠, 김희국, 이우현 의원, 회원사 대표 등 내·외빈 4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신흥균 신임회장은 '송백지조(松柏之操, 한겨울에도 시들지 않는 소나무와 잣나무의 지조)의 굳은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임기 내내 초심을 잃지 않고 업계의 든든한 일꾼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사회 2016년 1/4분기 주요일정 안내

※ 협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 자	주요행사명
2016. 1. 27.(수)	제31회 정기총회
2016. 2. 15.(월)	실적신고 접수 마감
2016. 3월 중	2016회계연도 제1차 전문건설인 경영세미나(조찬회)
2016. 3월 중	2016회계연도 제1차 회원고충해결 무료합동 상담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 진단 및 대책

건설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산재사고와 관련하여 주요 재해 사례를 소개하고 회원사에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사례별 안전대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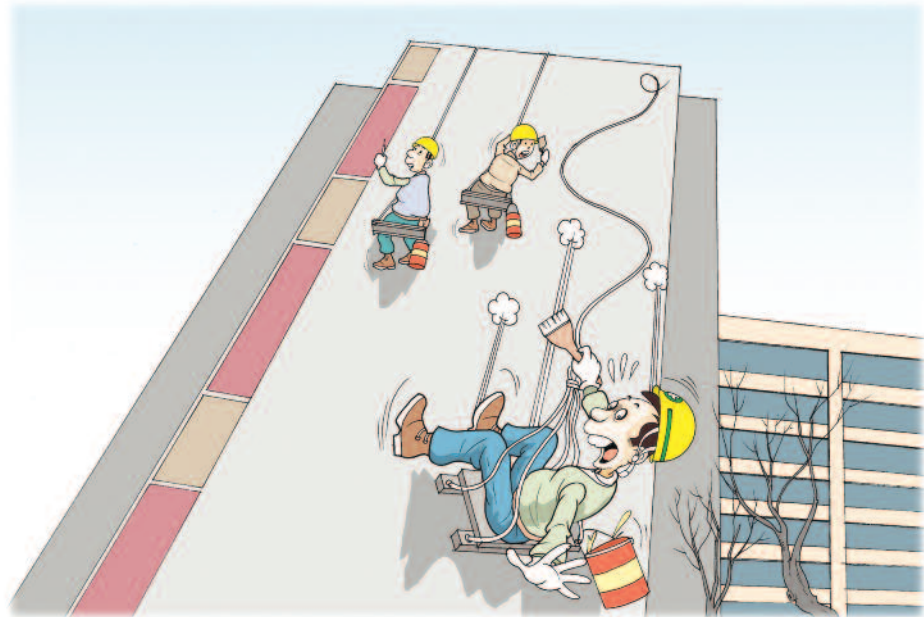
달비계 지지로프 결속부가 풀리며 떨어짐

공사명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발생일시	2013.12.11(수) 15:22경
재해형태	떨어짐	재해정도	사망 1명
소재지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공사규모	아파트 5개 동 옥상방수 및 외벽도장

재해개요

도장공인 피재자(남, 51세)가 아파트 외벽에 글자 도장작업을 하기 위해 달비계에 탑승한 직후 달비계 지지로프의 결속부가 풀려 달비계와 함께 약 28m 아래 지상 화단으로 떨어져 흉추 골절 및 장기손상 등에 의해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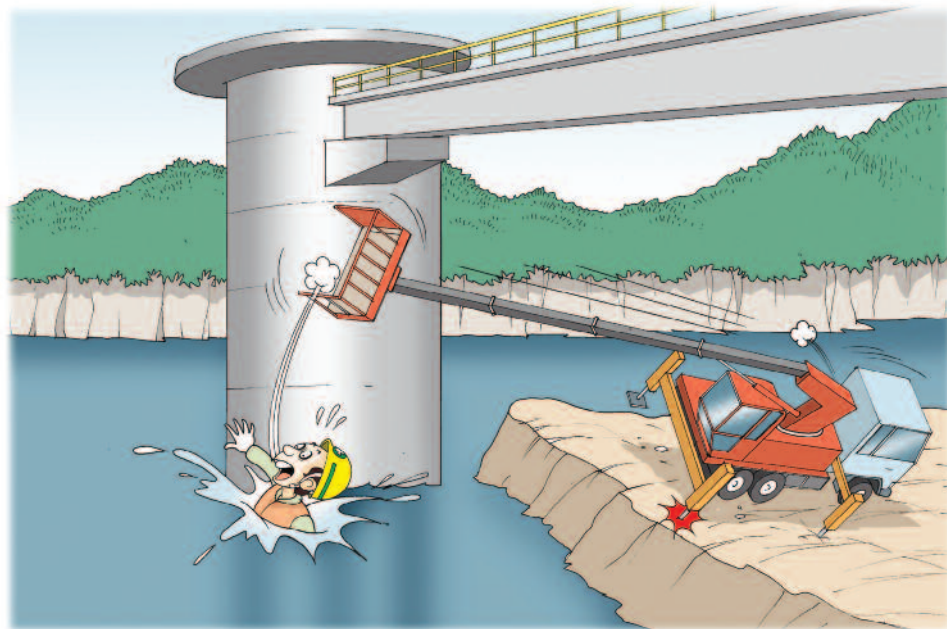
- 안전대 부착설비(수직구명줄) 설치 및 관리
 - 사업주는 달비계 작업 시 안전대를 체결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수직구명줄)를 설치하고 작업 전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함
- 안전대 지급 및 착용
 - 사업주는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대(달비계 작업 시에는 추락방지대(로립)가 있는 안전대 사용)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여 안전대 부착설비(수직구명줄)에 체결하고 작업토록 하여야 함
- 작업방법 개선
 - 달비계 지지로프의 매듭은 견고한 구조물인 벤츄레타(흡출기) 덕트, 옥탑승강용 사다리(양카 고정), 청소용 고리 등 2개소의 고정점에 2중으로 결속한 후 작업토록 하여 결속부 풀림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여야 함

연락교량 강선 인장작업 중 고소작업차 전도로 인한 1명 익사

공사명	담양댐 둑 높임	발생일시	2013.10.17(목) 11:55경
재해형태	익사	재해정도	사망 1명
소재지	전남 담양군 금성면	공사규모	취수탑 H=3.4m증고, 여수토방수로 L=231.5m

재해개요 2013.10.17.(목) 11:55경,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소재 롯데건설(주) 담양댐 둑 높임 현장에서 재해자가 고소작업차 작업대에 탑승하여 연락교량 강선 2차 인장작업을 하던 중, 고소작업차가 전도되면서 탑승하고 있던 고소작업대가 강하하여 재해자가 물에 빠져 익사한 재해로 추정됨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고소작업차 붐의 작업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
- 고소작업차 설치 지반의 침하 방지를 위한 다짐 철저 및 갓길의 설치를 금지하는 등 전도방지 조치 철저



AQUARIUS

물병자리 1월 20일 ~ 2월 18일
차분하고 부드러운 운의 흐름

새로운 아이디어로 일이 술술 풀리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익과 즐거움이 따르므로 좋은 기회가 있다면 주저 없이 잡으셔야 합니다. 다만, 대인관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면 어느 해보다 평온한 해가 될 것입니다.

행운의 색 : 흰색
행운의 장소 : 바다



PISCES

물고기자리 2월 19일 ~ 3월 20일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모습이 필요한 때

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끌벅적한 주변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기를 권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보다는 자신의 영역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운의 색 : 갈색
행운의 장소 : 종교시설



ARIES

양자리 3월 21일 ~ 4월 19일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는 해

그동안 진행되었던 일의 성과가 부족했다면 2016년을 기대해볼 만합니다. 지금까지 연을 맺은 사람들이 보답하기 시작하고, 어려웠던 일이 실타래 풀리듯 술술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하던 일을 하고 주변 사람들과 연을 더 돈독하게 유지하세요. 사업을 시작하기에도 좋은 시기입니다.

행운의 색 : 빨간색
행운의 장소 : 서점



TAURUS

황소자리 4월 20일 ~ 5월 20일
도약을 위한 준비의 시기

자신도 몰랐던 재능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공부를 해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 보세요. 뜻하지 않은 행운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능력이 더욱 발휘되고, 만약 아직 기회가 있다면 긍정적으로 고려해볼 만합니다. 금전운에서는 쓸데없는 지출만 줄인다면 원만하고 좋은 한 해가 예상됩니다.

행운의 색 : 금색
행운의 장소 : 기차역



GEMINI

쌍둥이자리 5월 21일 ~ 6월 21일
큰 운의 흐름을 타고 가는 시기

올해는 좋은 기회가 많이 들어오는 해로, 금전운이 좋은 시기입니다. 고정적인 수입 외에도 부가적인 수입이 들어올 가능성이 큼니다. 다만, 이리저리 자리를 옮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가능한 고정적인 곳에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극적인 것과 충동적인 것을 꼭 구별해주세요.

행운의 색 : 보라색
행운의 장소 : 리조트



CANCER

게자리 6월 22일 ~ 7월 22일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해

연애운과 더불어 결혼운이 있습니다. 아직 짝이 없다면 진지한 만남 전제로 신중하게 만나 보세요. 기혼자라면 풍부한 에너지와 활력으로 가득 차,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와 좋은 성과가 기대됩니다. 아쉽게도 금전운은 썩 좋지 못해 투자보다는 저축이 유리합니다.

행운의 색 : 은색
행운의 장소 : 피트니스센터

별자리 운세 보는법

자신의 별자리는 생일로 알아보면 된다. 별자리는 양력으로 구분해야 하며 아래와 같이 생일별로 총 12개의 별자리로 구분할수 있다.

KOSCALETTER Vol.7



LEO

사자자리 7월 23일 ~ 8월 22일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시기

올해는 중재자 역할을 할 때로 대부분 당신이 의견을 중재하고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힘들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해 생각지도 않았던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네요. 올해는 내년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그동안의 고민이나 문제를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행운의 색 : 파란색

행운의 장소 : 공항



VIRGO

처녀자리 8월 23일 ~ 9월 23일 눈높이를 낮춰야 하는 해

중후반에 운이 상승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잘 풀리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운이 좋지 않던 사람에게는 그동안의 투자에 대한 보상을 받고, 인생을 만끽할 수 있는 즐거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다만, 올해 전반부에는 건강에 미리 대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행운의 색 : 검은색

행운의 장소 : 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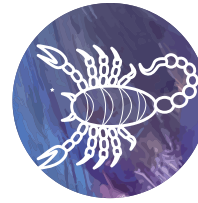
LIBRA

천칭자리 9월 24일 ~ 10월 22일 미래를 만들어가는 시기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한 해입니다. 출발은 저조할 수도 있지만, 곧 당신의 노력과 재능이 빛을 발해 큰 꽃을 피울 때가 옵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권합니다. 갑작스러운 지출이나 분쟁이 생길 수 있으나 흔들리지 않으면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 : 회색

행운의 장소 : 마천루



SCORPIO

전갈자리 10월 23일 ~ 11월 22일 작은 정성과 마음이 필요한 때

모든 분야에서 목표가 생기고 새로운 기회가 부여되니, 봄날에 피어나는 새싹처럼 행운이 최고조에 이릅니다. 그 기회를 잡아 뭐든지 깊이 들어가 본다면, 지금까지 없는 행운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금전의 경우 앞으로를 위한 꾸준한 저축과 대비를 해두면 더욱 좋습니다.

행운의 색 : 분홍색

행운의 장소 : 산



SAGITTARIUS

사수자리 11월 23일 ~ 12월 24일 겸손하고 신중한 자세가 필요한 시기

그동안 쏟아 부었던 희생에 대한 보상과 발전이 찾아옵니다. 다만, 거기에만 안주해서 더 이상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공든 탑도 무너지게 됩니다. 특히,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평소에 규칙적인 생활을 해주는 편이 좋습니다. 책을 통해서 능력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행운의 색 : 주황색

행운의 장소 : 공원



CAPRICORN

염소자리 12월 25일 ~ 1월 19일 주변 사람들을 잘 관리해야 하는 해

자신감이 넘쳐나고 뭐든지 도전하고 싶은 한 해가 될 예정입니다. 많은 발전과 대가가 주어지므로 자신다움을 발견할 수 있으며, 본인의 창의력과 재능을 최대한 끌어올려 정진하면 반드시 기쁨이 따릅니다. 다만, 이성적이고 냉정한 태도보다는 정감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서도록 하십시오.

행운의 색 : 진청색

행운의 장소 : 화원

코스카레터즌 읽고..

코스카레터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나,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다뤘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해주세요!

독자의견은 메일(kosca21@kosca.or.kr)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독자의견을 보내주신 분께는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상품(문화상품권 등)을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거북설비(주)
황미숙 과장

책 상 한쪽에 놓여 있던 코스카레터를 치우려다가 다시 한 번 자세히 보게 되었는데 각종 유용한 정보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특히 법령의 개정 사항이나, 건설업자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앞으로는 책상에 계속 두고 필요한 내용들을 찾아보게 될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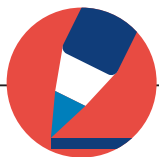


(주)우림조경개발
박미애 대표이사

38 장으로 만들어진 코스카레터 6호를 읽으면서, 7호가 기대되는 마음입니다. 중요한 협회 소식과 건설공사 수주 지원 및 개선사업은 알 거리를 제공하였고, 잠깐의 시간에도 새로운 정보를 얻었습니다. 특히, 신기술 소개와 건설 산업정보는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사무실 밖으로 나무들이 하나 둘 낙엽을 떨구고 빈 마음으로 한겨울을 이겨내는 목연 수행 중입니다. 조금 황량하기도 한 이 마음에 손에 들린 코스카레터의 특별기고 '러시아 문화유적지와 러시아 근대 산업 사찰'의 기행문은 러시아의 유적을 따라 함께하는 대리만족의 기쁨도 가져왔습니다.

특히 겨울 궁전인 '에르미타주'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영국의 대영 박물관과 함께 세계 3대 박물관으로 불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젠 책꽂이 한쪽에 자리한 대한전문건설협회 '코스카레터'가 알찬 내용과 지식으로 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독자퀴즈

코스카레터 잘 읽으셨나요? Quiz를 푼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지난호 독자퀴즈 정답자 발표

- 희민건설(주) 이소진 주임
- 남곡조경 이향수 실장

지난호 독자퀴즈 정답

- 3개월

Q 국토교통부에서는 2015년 11월 2일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주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에서 0억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시행에 들어갔으며, 향후 계약관계 법령 정비 후 7억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가 얼마 미만으로 상향되었을 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협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팝업창을 통해 응모 (기간 : 2016. 2. 29(월)까지)하시면 추첨하여(정답자에 한함)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www.ftc.go.kr

“하도급 · 유통분야 불공정행위” 익명으로도 제보하세요!

익명제보

▶ 중소기업이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하더라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기 어려운 경우 익명제보센터에 제보하세요.

• www.ftc.go.kr → 민원참여 → 하도급 · 유통 익명제보센터 에 제보

익명제보센터는 제보자의 인적사항, IP주소를 별도로 수집하지 않아 제보자의 신원이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울러, 조사단계에서도 제보자의 신원이 추정되지 않도록 조사시기, 조사범위를 신속적으로 조정합니다.

※ 익명제보센터는 제보자의 익명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제보에 대한 처리 진행상황, 결과 등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익명제보센터에 제보된 내용중 △하도급법 또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이미 실명으로 신고하거나 처리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피제보자에게 이미 제보자의 신원이 알려진 경우, △타부처 소관 법률과 관련된 사항 등의 경우에는 접수 및 처리가 곤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익명제보센터 문의 : 044-200-4593

실명신고 및 분쟁조정 신청

▶ 하도급 · 유통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하여 그 처리과정 및 결과를 통지받고 싶을 경우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세요.

• 온라인 신고 : www.ftc.go.kr → 민원참여 → 불공정거래 신고

• 서면 신고 : 원사업자의 소재지가 있는 지방사무소

연락기관	담당지역 및 업무	연락처
종합상담실	하도급법 질의 및 진화상담	044-200-4010
서울사무소 제2하도급과 · 건설하도급과	서울, 인천, 경기, 강원지역	02-2110-6161~7 02-2110-6144~9
부산사무소 하도급과	부산, 울산, 경남지역	051-460-1041~5
광주사무소 하도급과	광주, 전남북, 제주지역	062-975-6841~4
대전사무소 하도급과	대전, 충남북, 세종지역	042-481-8018~20
대구사무소 하도급과	대구, 경북지역	053-230-6341~4

▶ 하도급 · 유통 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분쟁을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중앙회, 건설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회 등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콜센터(1588-1490, www.kofair.or.kr)
- 중소기업중앙회 분쟁조정협의회(02-2124-3132, www.kbiz.or.kr)
- 건설협회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02-549-2105~6)
- 전문건설협회 공정거래정책부(02-3284-1088)



공정거래위원회
FAIR TRADE COMMISSION